

세법연구 12-07

# 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연구

2012.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 연구진

### 연구책임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전문연구원

이 정 미 전문연구원

#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	12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2
2. 근로장려세제	14
가. 근로장려세제의 체계	14
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15
다. 근로장려금 산정	21
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주기	22
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22
3. 자영업의 과세소득 산정과 신고납부의무	23
가. 자영업의 과세소득 산정	23
나. 신고 및 납부 의무	25
III.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27
1. 미국	27
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EITC	27
나. EITC 제도	29
다.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적용기준	36
라. 관련 통계	48
2. 캐나다	50
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WITB	50
나. WITB 제도	52
다. 자영업자에 대한 WITB 적용기준	56

3. 영국	62
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WTC	62
나. WTC 및 CTC 제도	64
다. 자영업자에 대한 WTC 적용기준	73
라. 관련 통계	86
4. 뉴질랜드	89
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IWTC	89
나. IWTC 제도	91
다. 자영업자에 대한 IWTC 적용기준	96
라. 관련 통계	103
<b>IV. 근로장려세제의 국제비교</b>	<b>105</b>
1.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105
2.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및 근로요건	106
3. 임금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107
4.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 시 소득산정	110
<b>V. 시사점 및 결론</b>	<b>114</b>
1.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및 적용요건	114
2.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116
<b>참고문헌</b>	<b>119</b>
<b>부 록</b>	<b>121</b>
〈부록 1〉 미국의 EITC 신청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checklist	121
〈부록 2〉 SE tax 부과를 위한 자영업자 소득산정 스케줄	122
〈부록 3〉 미국의 자영업자 사업소득 보고를 위한 스케줄	124
〈부록 4〉 영국의 자영업자 소득산정 방식(예시)	126
〈부록 5〉 자영업자 소득신고 신청양식(영국)	131
〈부록 6〉 캐나다의 WITB 산출 양식	135

## 표 목 차

〈표 II-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6
〈표 II-2〉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	18
〈표 II-3〉 재산의 범위 및 평가액.....	20
〈표 II-4〉 근로장려금의 산출식.....	22
〈표 III-1〉 미국 EITC 급여산정기준 추이(1975년~2012년).....	32
〈표 III-2〉 EITC 급여액 산정표.....	36
〈표 III-3〉 미국의 EITC 신청자격 .....	40
〈표 III-4〉 자영업의 근로소득.....	41
〈표 III-5〉 연도별 EITC 신청 및 급여액.....	49
〈표 III-6〉 캐나다 WITB의 급여체계(2007년~2012년).....	53
〈표 III-7〉 캐나다의 지역별 WITB 지급액(2012년).....	55
〈표 III-8〉 WITB 장애인 추가급여(2012년).....	56
〈표 III-9〉 WTC(Working Tax Credit) 지급률.....	67
〈표 III-10〉 CTC(Child Tax Credit) 지급률.....	67
〈표 III-11〉 WTC와 CTC의 소득기준 .....	68
〈표 III-12〉 아동수당(Child Benefit rates).....	68
〈표 III-13〉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를 하지 않고 아이만 있는 경우).....	69
〈표 III-14〉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 장애: ×, 25세 이상).....	70
〈표 III-15〉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 장애: ○, 25세 이상).....	70
〈표 III-16〉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_1명, 양육비용: ○).....	71
〈표 III-17〉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_2명, 양육비용: ○).....	72
〈표 III-18〉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_3명, 양육비용: ○).....	72

〈표 III-19〉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 양육비용: ×).....	73
〈표 III-20〉 소득 변화 시 신고요구.....	75
〈표 III-21〉 자영업자의 납세신고 시 기록해야 하는 소득관련 목록.....	79
〈표 III-22〉 자영업자의 공제 가능·불가능 비용 목록 .....	81
〈표 III-23〉 WTC와 CTC 관련 가구수(2003년~2012년).....	87
〈표 III-24〉 수혜 가구별 분류(독신, 부부 및 아이)(2012년 4월 기준).....	88
〈표 III-25〉 WfFTC의 급여형태 및 내용 .....	93
〈표 III-26〉 가족지원제도의 체계 .....	93
〈표 III-27〉 소득수준에 따른 FTC와 IWTC의 주당 급여액(2012.4.1~2013.3.31).....	94
〈표 III-28〉 MFTC의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액 .....	96
〈표 III-29〉 WfFTC의 신청요건 및 내용.....	97
〈표 III-30〉 IWTC의 신청방법 및 내용 .....	100
〈표 III-31〉 IETC의 신청자격 요건.....	101
〈표 III-32〉 IR3의 발행과 제출 및 처리과정.....	102
〈표 III-33〉 IETC 공제내역.....	102
〈표 III-34〉 WfFTC의 수급자수 및 채무금액 추이.....	103
〈표 III-35〉 WfFTC의 가구당 평균수급액 추이(2001년~2010년).....	104
〈표 IV-1〉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개요 .....	106
〈표 IV-2〉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및 근로요건 비교.....	107
〈표 IV-3〉 주요국의 임금소득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비교.....	109
〈표 IV-4〉 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시 소득산정 방식 비교.....	112
〈표 IV-5〉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임금소득자·자영업자의 기준소득 범위.....	113

## 그림 목차

[그림 II-1] 총급여 및 자녀의 수에 따른 근로장려금(2012년).....	15
[그림 III-1] EITC 급여체계(2012년).....	34
[그림 III-2] 미국의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 산정 .....	46
[그림 III-3] 캐나다의 근로소득 산정.....	59
[그림 III-4] 캐나다 자영업 소득 산정.....	61
[그림 III-5] 현행급여체계와 Universal Credit의 구조 .....	63
[그림 III-6] 영국의 WTC와 CTC의 구조.....	65



## I. 서론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통하여 극빈층으로의 하락을 예방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12.30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전과 근로유인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적을 지님
    -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여 단순한 소득지원효과 외에도 근로의욕을 높이고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임
  
-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세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등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임
    - 미국은 1975년 EITC 제도를 도입하였고, 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EITC 제도로 인해 근로의욕 고취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sup>1)</sup>
    - 캐나다는 2007년에 WITB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미함
  
-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음
  - 도입 당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

1) <http://www.taxpolicycenter.org/briefing-book/key-elements/family/eitc.cfm>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 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그러나 최근 빈곤층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을 것임
  
-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인구의 28.8%(2010년 기준)<sup>2)</sup>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음
  - 최근,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가 창업을 장려해 온 측면도 있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조기퇴직자 및 취업준비생들의 비자발적 창업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는 2010.1.1 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에 포함할 계획에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나 아직 제도적인 준비가 미비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소득파악 수준은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50~60% 내외로 추정<sup>3)</sup>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근거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은 EITC의 적용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장부기록 개선 및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이 증가되어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해져 조세 및 복지행정의 효율성·형평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2) <http://www.asiatoday.co.kr/news/ShellView?ArticleID=2009050613582803003>

3) 전병목(2006)

- 본 보고서는 이미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적용기준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를 소개함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와 보육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영국, 뉴질랜드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식과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을 위한 규정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소개함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대상 국가의 근로장려세제를 비교함
    - 제5장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음

## Ⅱ.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EITC)

###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보전과 근로유인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적을 갖는 제도임
  - 근로를 통한 지속적인 탈빈곤을 추구하는 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가 지니는 공공부조의 성격 때문에 각 국가의 근로장려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sup>4)5)</sup>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음
  -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임
    -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
  -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4)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2012)에서 요약 정리

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의미함

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기준에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sup>6)</sup>’에서 대체된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의 총 7종의 급여를 보장하고 있음
  -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정부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가 있음
  -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중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자활급여는 수급자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탈빈곤 및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의 아동 및 보육관련 서비스 중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보면, 보육바우처(아이사랑카드)제도,<sup>7)</sup> 보육시설 이용 지원(보육료 지원),<sup>8)</sup> 보육시설 미이용 지원(양육수당 지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sup>9)</sup>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

---

6) 1961년 이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제도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권리와 사회 전체적인 빈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자활제도를 돕으로써 수급자들 스스로 빈곤탈피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제도임

7) 보육바우처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아이사랑카드제도임

8) 보육시설 이용 지원이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만 0~4세아 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교육, 다문화 아동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으로 구성됨

9) 보육에 관한 정책이 과거에는 탁아사업에 머물렀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음

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장려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는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제도임

○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부조의 보충적 기능을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2. 근로장려세제<sup>10)</sup>

### 가. 근로장려세제의 체계

□ 저소득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을 통하여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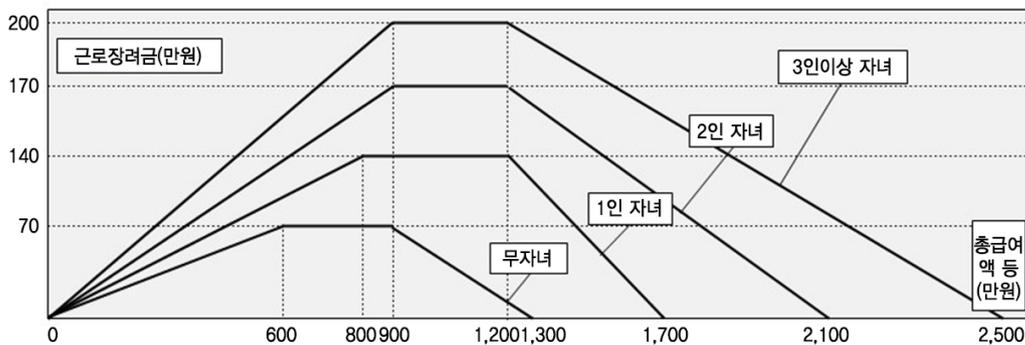
○ 2010.1.1. 법 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을 ‘저소득근로자’에서 ‘저소득자’로 개정함으로써 2014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 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10)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사이트 참고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됨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그림 II-1] 총급여 및 자녀의 수에 따른 근로장려금(2012년)



자료: 국세청

### 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에 한함)<sup>11)</sup>이 있는 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 요건, 연간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및 재산가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규정은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10년 1월 1일 법 개정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자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11)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

- 따라서 2014년 귀속분부터는 자영업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sup>12)</sup>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 외국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표 II-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내용
배우자 및 부양자녀	- 배우자 있고, 적격한 부양자녀가 없거나 1인 이상
연간 총소득	-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 - 총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비과세소득 제외)
주택	- 무주택이거나 6천만원 이하의 1주택
재산가액	-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재산: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자료: 국세청

### 1) 배우자 및 부양자녀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란 ①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② 18세 미만(중증장애인<sup>13)</sup>의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sup>14)</sup>, ③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의 세 가지 요건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1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을 모두 갖춘 자임

-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자일 것
  -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함<sup>15)</sup>
  -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2) 연간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sup>16)</sup>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3에서 열거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함
    -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한함)은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총소득의 합계액에 포함
    -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

14)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2 제3항

15)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항 및 제2항

16) 조특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2호

- 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총소득의 합계액에 포함
- 즉, 사업소득의 경우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을 기준으로 하고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이 때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표 II-2〉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단위: 명, 만원)

부양자녀 수	0	1	2	3
총소득기준 금액	1,300	1,700	2,100	2,500

자료: 국세청

### 3)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이 때 1세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sup>17)</sup>
-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함
  - 복합건물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sup>18)</sup>
  - 주택소유의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함
    -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함<sup>19)</sup>
  - 주택 소유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납세의 무자를 소유자로 봄

17)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18)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2항

19)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4항

- 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봄<sup>20)</sup>

- 2008년 12월 26일 법 개정 이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두고 있었으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 4) 재산가액 요건

-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20)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5항 및 제6항

〈표 II-3〉 재산의 범위 및 평가액

재산의 범위	재산의 평가액
①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sup>1)</sup>	시가표준액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sup>2)</sup>	시가표준액
③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	-
④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금융재산 <sup>3)</sup>	금융재산의 잔액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⑥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다음의 유가증권 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국채·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다.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소유기준일 <sup>4)</sup>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sup>5)</sup> 주권상장법인 외의 주식은 액면가액 나. 액면가액 다. 액면가액
⑦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다음의 권리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입주권 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의 조합원입주권 제외) 다.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신항만건설촉진법·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라.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가. -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시행규칙 제45조의3 제2항 제1호 나목) 나.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시행규칙 제45조의3 제2항 제2호) 다. 액면가액 라. 액면가액

- 주: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  
2)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  
3) 금융재산이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 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4) 영 제100조의4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함  
5)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2, 제45조의 3

- 2010년 2월 18일 시행령 개정 시 금융재산의 보유형태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재산의 범위에 예·적금과 성격이 유사한 저축성보험을 포함하였음
  - 동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 재산의 소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함
    -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함
  -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결정: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봄
  -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결정: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25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봄

#### 다. 근로장려금 산정

-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소득)을 합한 금액임
  -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함

〈표 Ⅱ-4〉 근로장려금의 산출식

(단위: 명, 만원)

부양자녀 수	총급여액 등	구간	근로장려금
0	600 미만	점증구간	총급여액 × 7/60
	600 이상 900 미만	평탄구간	70만원
	900 이상 1,300 미만	점감구간	(1,300만원 - 총급여액) × 7/40
1	800 미만	점증구간	총급여액 × 7/40
	800 이상 1,200 미만	평탄구간	140만원
	1,200 이상 1,700 미만	점감구간	(1,700만원 - 총급여액) × 28/100
2	900 미만	점증구간	총급여액 × 17/90
	900 이상 1,200 미만	평탄구간	170만원
	1,200 이상 2,100 미만	점감구간	(2,100만원 - 총급여액) × 17/90
3	900 미만	점증구간	총급여액 × 2/9
	900 이상 1,200 미만	평탄구간	200만원
	1,200 이상 2,500 미만	점감구간	(2,500만원 - 총급여액) × 2/13

자료: 국세청

#### 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주기

- 신청 방법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3개월 내에 지급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지급결정 후 1개월 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됨
- 따라서 장려금 수령은 9월경에 이루어짐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며,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임

#### 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환급 제한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 제한
- 부정 수급으로 확인된 근로장려금은 전액 추징하고 환급일부터 환급취소결정일까지 0.03%의 이자상당액을 같이 징수함

### 3. 자영업의 과세소득 산정과 신고납부의무

#### 가. 자영업의 과세소득 산정<sup>21)</sup>

-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과세됨
  - 종합과세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의 공제가 인정되고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소득에서의 공제도 허용됨<sup>22)</sup>
  - 과세 제외되는 사업은 농업 중 작물재배업,<sup>23)</sup>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sup>24)</sup>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기관, 사회복지사업<sup>25)</sup>
  - 비과세되는 소득은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sup>26)</sup>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부업, 임목 벌채 등<sup>27)</sup>으로 발생한 소득,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임<sup>28)</sup>

21) 이준규·박성욱(2012)에서 정리함

22)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제45조 제1항

23)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하되, 판매장 등을 특설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 소득으로 봄

24) 단,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는 연구 및 개발용역제공사업은 제외

25)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5조, 제36조

26) 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것

27)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및 양도로 발생한 소득(연 600만원 이하)

28) 소득세법 제12조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포함함<sup>29)</sup>
- 사업수입금액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
  - 사업과 관련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 재고자산 등의 자가소비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 기타 사업과 관련한 수입
- 다음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액 또는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 이월익금
  -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사업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 수입금액 중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액
  -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 환부이자 등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
  -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등 재고자산 외 자산의 처분이익
  - 자산의 평가차익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즉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sup>30)</sup>

29)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30)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제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매출원가, 수선비 등 관리유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금,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해손실,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의한 평가차손, 대손금, 장려금, 광고선전비, 충당금과 준비금의 설정, 여비, 기부접대비, 공과금, 판매비용, 퇴직연금부담금 등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종업원 급여, 사업자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세법상 인정하는 기부금 공제한도 금액

□ 다음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sup>31)</sup>

- 사업자의 급여
-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등 재고자산 외 자산의 처분손실
- 가사관련비<sup>32)</sup>
- 업무무관자산취득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
-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준비금 및 충당금의 한도초과액
-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벌금·과료·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건설자금이자 및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선급비용, 임의납부공과금과 법령상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Time-off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

## 나. 신고 및 납부 의무

-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형태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정부의 별도 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관

31) 소득세법 제33조~제3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83조

32) 예를 들면,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사용·거주하게 한 주택에 관련된 경비 등

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sup>33)</sup>

-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득금액은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함
  -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기장신고라 하는데, 기장신고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sup>34)</sup>로 구분됨
    - －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명세서, 충당금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충당금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sup>35)</sup>,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실지조사결정과 추계결정의 두가지 방법이 있음
  -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에 의할 수 있음

---

33) 소득세법 제80조

34) 간편장부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임.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됨

35) 소규모사업자 제외

### Ⅲ.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 1. 미국

##### 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EITC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내에서 EITC 제도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살펴봄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되어 있음<sup>36)</sup>
  - 공공부조 체계는 ① 빈곤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② 빈곤가정일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③ 식품권(Food Stamps), ④ 메디케어(Medicaid), ⑤ 일반부조(General Assistance: GA)로 구성됨
  - 사회보험은 노령·유족·장애·건강 보험으로 구성됨
  
- 소득보장 관련 5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총급여액 합계가 노령·유족·장애·건강 연금제도에 사용된 총급여액의 18.12% 수준이므로 미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중심이라 할 수 있음<sup>37)</sup>
  - 미국의 공공부조는 노인, 장애인, 아동과 그 가족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에서 소득지원을 받으려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에

36)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는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미국』(2012)에서 요약 정리함

37) 유혜경(2011)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관리됨

- 하나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혹은 근로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소득보장 지원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가정과 그에 속한 아동집단임
  - 보충적 소득보장 지원집단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장애인으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임
  - 빈곤가족 일시부조의 수급자격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지닌 저소득층 가구이고 최장 60개월까지 지급되며 수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개시 후 2년이 지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야 함

□ 현물로 제공되는 공공부조제도는 식품권과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음

- 식품권은 공공부조제도 중 수혜대상자가 가장 많은 제도로, 전 인구의 6.45%가 포함됨
- 메디케이드(Medicaid)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저소득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일반부조(GA)는 빈곤가족 일시부조와 보충적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일부 저소득층 즉, 부양아동이 없거나 또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짐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보충적사회보장제도(SSI)’, 근로가 가능한 계층을 위한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일반부조제도(GA)’로 이루어짐

- 미국의 근로장려세제<sup>38)</sup>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어도 EITC의

38) ‘근로장려세제’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명칭이지만, 근로 장려를 목적으로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적인 기능을 갖고 있음

- 미국의 EITC 제도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에 속하는 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빈곤층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내에서 EITC 제도의 역할은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세 부담액을 줄이는 데 있음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사회보장세가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된다는 사회적 논란에 의해, 사회보장세에 면세점을 설정하는 대신 EITC 제도를 통해 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임

## 나. EITC 제도

### 1) 도입배경<sup>39)</sup>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내에서 발생했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 활발한 시기에 도입되었음
  - 존슨대통령(1963~69)은 1964년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였음
  - ‘부의 소득세’는 1966년 당시 ‘빈곤과의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던 경제기회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의 주요 정책이었음
    - ‘부의 소득세’란 특정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저소득보장 수준에 미달될 때 그 차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조세환급의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 주는 제도임
  - 그러나 ‘부의 소득세’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음<sup>40)</sup>

---

39) Hotz and Scholz(2002)

- 1969년에 닉슨대통령은 기존에 운영 중인 ‘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저소득가구지원제도(Family Assistance Plan: FAP, 이하 ‘FAP’라 함)’를 통해 부의 소득세를 제안하였음
  - FAP는 진보주의자에게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비용이 과대하고 엄격한 근로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음
  
- 상원재정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의 의장인 Russell Long은 FAP를 반대하고, 대신 근로를 하고자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가 제시한 방안은 대규모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장세 경감을 위한 임금의 10%에 상당하는 근로상여금(Work Bonus)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음
  - 결국 FAP는 1972년 폐지되었고 Russell Long은 향후 3년간 근로상여금제도를 공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Long의 제안은 1960년부터 1970년까지 급여세(payroll tax) 세율이 3.0%에서 4.8%로 증가하였고 1973년에는 다시 5.8%로 증가하여 저소득 가구의 세부담 증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힘입어 1975년 법안으로 통과되었음
  - EITC 제도는 근로상여금의 변형된 형태로 세금감면법(The Tax Reduction Act of 1975)에 의해 18개월간의 한시적인 조치로서 도입되었음
  - 197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1976)에서 1976~1977년까지 EITC를 계속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977년 조세감면과 단순화법(Tax Reduction and Simplification Act)에 의해 EITC는 1978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이후 1978년 세입법(Revenue Act)을 통해 소득세법(IRC §32)으로 정식 흡수되었음<sup>41)</sup>

40)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기간에 Gary(Indiana)(1971~74년), New Jersey(1968~72년), Iowa(1969~73년), Seattle-Denver(1971~82년)의 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었음(김재진(2009) 참조)

41) 김재진(2009)

- EITC 제도를 도입한 초기의 목적은 저소득근로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세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음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 면세를 허용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사회보장법에 의한 사회보장세는 저소득층에도 부과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세 부담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임
    -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세에 면세점을 설정하는 대신 저소득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장세를 환급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EITC 제도를 도입한 것임
  
- 1975년 도입 당시의 EITC는 점증-점감의 형태였으나 1979년 지금의 형태인 점증-평탄-점감의 형태로 변경되었고 이후 적용범위 및 급여액 등에 관한 개정이 있었음
  - 도입 시 EITC는 부양자녀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증-점감의 형태로 급여증가율 및 급여감소율은 각각 10%였음
    - 0~4천달러 구간은 점증구간, 4천~8천달러 구간은 점감구간임
  - 1979년도에는 점증-평탄-점감의 형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음
    - 0~5천달러 구간은 점증구간, 5천~6천달러 구간은 평탄구간, 6천~1만달러 구간은 점감구간임
  - 1991년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급여액을 추가하여 자녀 수 1명 또는 2명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화하였음
  - 1994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가정을 적용범위에 포함하였음
  - 2002년부터는 맞벌이가구에 대해 신청 가능한 최대소득금액을 확대하였음
  - 2009년부터는 자녀가 3명인 가정에 대한 급여액을 추가하여 자녀 0명, 1명, 2명, 3명 이상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화하였고 각 소득구간의 금액을 물가상승에 연동시키기로 하였음

〈표 Ⅲ-1〉 미국 EITC 급여산정기준 추이(1975년~2012년)

(단위: 달러, %)

해당연도	점증구간	급여 증가율	최대 급여액	평탄구간	급여 감소율	점감구간	
1975~78	0~4,000	10.0	400	-	10.0	4,000~8,000	
1979~84	0~5,000	10.0	500	5,000~6,000	12.	6,000~10,000	
1985~86	0~5,500	11.0	550	5,500~6,500	12.22	6,500~11,000	
1987	0~6,080	14.0	851	6,080~6,920	10.0	6,920~15,432	
1988	0~6,240	14.0	874	6,240~9,840	10.0	9,840~18,576	
1989	0~6,500	14.0	910	6,500~10,240	10.0	10,240~19,340	
1990	0~6,810	14.0	953	6,810~10,730	10.0	10,730~20,264	
1991	자녀 1명	0~7,140	16.7	1,192	7,140~11,250	11.93	11,250~21,250
	자녀 2명 이상	0~7,140	17.3	1,235	7,140~11,250	12.36	11,250~21,250
1992	자녀 1명	0~7,520	17.6	1,324	7,520~11,840	12.57	11,840~22,370
	자녀 2명 이상	0~7,520	18.4	1,384	7,520~11,840	13.14	11,840~22,370
1993	자녀 1명	0~7,750	18.5	1,434	7,750~12,200	13.21	12,200~23,050
	자녀 2명 이상	0~7,750	19.5	1,511	7,750~12,200	13.93	12,200~23,050
1994	자녀 0명	0~4,000	7.65	306	4,000~5,000	7.65	5,000~9,000
	자녀 1명	0~7,750	26.3	2,038	7,750~11,000	15.98	11,000~23,755
	자녀 2명 이상	0~8,425	30.0	2,528	8,425~11,000	17.68	11,000~25,296
1995	자녀 0명	4,000	7.65	314	4,000~5,130	7.65	5,130~9,230
	자녀 1명	7,750	34	2,094	7,750~11,290	15.98	11,290~24,396
	자녀 2명 이상	8,425	36	3,110	8,425~11,290	20.22	11,290~26,673
1996	자녀 0명	4,100	7.65	323	4,100~5,280	7.65	5,280~9,500
	자녀 1명	6,160	34	2,152	6,160~11,610	15.98	11,610~25,078
	자녀 2명 이상	8,640	40	3,556	8,640~11,610	21.06	11,610~28,495
1997	자녀 0명	4,220	7.65	332	4,220~5,430	7.65	5,430~9,770
	자녀 1명	6,330	34	2,210	6,330~11,930	15.98	11,930~25,750
	자녀 2명 이상	8,890	40	3,656	8,890~11,930	21.06	11,930~29,290
1998	자녀 0명	4,460	7.65	341	4,460~5,570	7.65	5,570~10,030
	자녀 1명	6,680	34	2,271	6,680~12,260	15.98	12,260~26,473
	자녀 2명 이상	9,390	40	3,756	9,390~12,260	21.06	12,260~30,095
1999	자녀 0명	4,530	7.65	347	4,530~5,670	7.65	5,670~10,200
	자녀 1명	6,800	34	2,312	6,800~12,460	15.98	12,460~26,928
	자녀 2명 이상	9,540	40	3,816	9,540~12,460	21.06	12,460~30,580
2000	자녀 0명	4,610	7.65	353	4,610~5,770	7.65	5,770~10,380
	자녀 1명	6,920	34	2,353	6,920~12,690	15.98	12,690~27,413
	자녀 2명 이상	9,720	40	3,888	9,720~12,690	21.06	12,690~31,152
2001	자녀 0명	4,760	7.65	364	4,760~5,950	7.65	5,950~10,710
	자녀 1명	7,140	34	2,428	7,140~13,090	15.98	13,090~28,281
	자녀 2명 이상	10,020	40	4,008	10,020~13,090	21.06	13,090~32,121
2002	자녀 0명	0~4,910	7.65	376	4,910~6,150	7.65	6,150~11,060
	자녀 1명	0~7,370	34.0	2,506	7,370~13,520	15.98	13,520~29,201
	자녀 2명 이상	0~10,350	40.0	4,140	10,350~13,520	21.06	13,520~33,178

〈표 Ⅲ-1〉의 계속

해당연도	점증구간	급여 증가율	최대 급여액	평탄구간	급여 감소율	점감구간	
2003	자녀 0명	0~4,990	7.65	382	4,990~6,240	7.65	6,240~11,230
	자녀 1명	0~7,490	34.0	2,547	7,490~13,730	15.98	13,730~29,666
	자녀 2명 이상	0~10,510	40.0	4,204	10,510~13,730	21.06	13,730~33,692
2004	자녀 0명	0~5,100	7.65	390	5,100~6,390	7.65	6,390~11,490
	자녀 1명	0~7,660	34.0	2,604	7,660~14,040	15.98	14,040~30,338
	자녀 2명 이상	0~10,750	40.0	4,300	10,750~14,040	21.06	14,040~34,458
2005	자녀 0명	0~5,200	7.65	399	5,200~6,530	7.65	6,530~11,750
	자녀 1명	0~7,830	34.0	2,662	7,830~14,370	15.98	14,370~31,030
	자녀 2명 이상	0~11,000	40.0	4,400	11,000~14,370	21.06	14,370~35,263
2006	자녀 0명	0~5,380	7.65	412	5,380~6,740	7.65	6,740~12,120
	자녀 1명	0~8,080	34.0	2,747	8,080~14,810	15.98	14,810~32,001
	자녀 2명 이상	0~11,340	40.0	4,536	11,340~14,810	21.06	14,810~36,348
2007	자녀 0명	0~5,590	7.65	428	5,590~7,000	7.65	7,000~12,590
	자녀 1명	0~8,390	34.0	2,853	8,390~15,390	15.98	15,390~33,241
	자녀 2명 이상	0~11,790	40.0	4,716	11,790~15,390	21.06	15,390~37,783
2008	자녀 0명	0~5,720	7.65	438	5,720~7,160	7.65	7,160~12,880
	자녀 1명	0~8,580	34.0	2,917	8,580~15,740	15.98	15,740~33,995
	자녀 2명 이상	0~12,060	40.0	4,824	12,060~15,740	21.06	15,740~38,646
2009	자녀 0명	0~5,970	7.65	457	5,970~7,470	7.65	7,470~13,440
	자녀 1명	0~8,950	34.0	3,043	8,950~16,420	15.98	16,420~35,463
	자녀 2명	0~12,570	40.0	5,028	12,570~16,420	21.06	16,420~40,295
	자녀 3명 이상	0~12,570	45.0	5,657	12,570~16,420	21.06	16,420~43,279
2010	자녀 0명	0~5,980	7.65	457	5,980~7,480	7.65	7,480~13,460
	자녀 1명	0~8,970	34.0	3,050	8,970~16,450	15.98	16,450~35,535
	자녀 2명	0~12,590	40.0	5,036	12,590~16,450	21.06	16,450~40,363
	자녀 3명 이상	0~12,590	45.0	5,666	12,590~16,450	21.06	16,450~43,352
2011	자녀 0명	0~6,070	7.65	464	6,070~7,590	7.65	7,590~13,660
	자녀 1명	0~9,100	34.0	3,094	9,100~16,690	15.98	16,690~36,052
	자녀 2명	0~12,780	40.0	5,112	12,780~16,690	21.06	16,690~40,964
	자녀 3명 이상	0~12,780	45.0	5,751	12,780~16,690	21.06	16,690~43,998
2012	자녀 0명	0~6,210	7.65	475	6,210~7,770	7.65	7,770~13,980
	자녀 1명	0~9,320	34.0	3,169	9,320~17,090	15.98	17,090~36,920
	자녀 2명	0~13,090	40.0	5,236	13,090~17,090	21.06	17,090~41,952
	자녀 3명 이상	0~13,090	45.0	5,891	13,090~17,090	21.06	17,090~45,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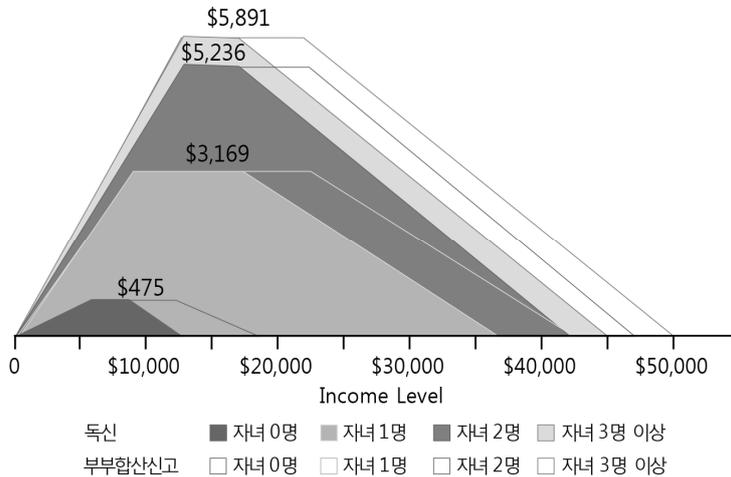
주: 독신에 적용되는 금액임. 2002년부터 맞벌이가구의 신청가능 최대소득 금액이 커짐. 2002~2004년 1,000달러, 2005~2007년 2,000달러, 2008년 3,000달러, 2009년 5,000달러, 2010년 5,010달러, 2011년 5,080달러, 2012년 5,210달러 증가

자료: [http://www.taxpolicycenter.org/taxfacts/Content/PDF/historical\\_eitc\\_parameters.pdf](http://www.taxpolicycenter.org/taxfacts/Content/PDF/historical_eitc_parameters.pdf)  
 1975~2003: Joint Committee on Taxation; ways and Means Committee, 2004 Green Book  
 2004~2009: IRS, Form 1040 Instructions  
 2010: IRS, Revenue Procedure 2009-50  
 2011: IRS, Revenue Procedure 2011-12  
 2011: IRS, Revenue Procedure 2011-52

2) 급여체계

-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반적인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만일 세액공제 금액이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IRS가 그 차액을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함
- EITC 급여액은 소득, 결혼여부, 적격자녀의 수 등을 기초로 산출되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매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됨
  - IRS는 매년 납세자들이 가능한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소득, 결혼여부, 자녀의 수와 같이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반영한 급여액 표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EITC 급여액은 점증-평탄-점감구간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임

[그림 Ⅲ-1] EITC 급여체계(2012년)



자료: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 즉, 점증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액이 증가하였다가 평탄구간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급여액이 일정하고 점감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액

이 감소하여 소득이 점감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급여액은 0이 됨

- [그림 Ⅲ-1]은 2012년도의 소득 구간별 자녀수 및 납세자구분에 따른 급여체계를 나타냄

### 3) 급여액의 산정

- 2011년에 적용되는 EITC 공제율과 구간별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표 Ⅲ-2>와 같음
  - 공제율과 EITC 금액은 자녀의 수와 납세자구분에 따라 정해짐
  - 자녀가 1명인 납세자이고 부부합산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이 3만 6,052달러 미만인 경우 급여액 지급 대상임
    - 소득이 점증구간인 0~9,100달러의 구간에 속하는 경우, 34%의 급여증가율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여 소득이 9,100달러에 도달하면 급여액은 3,094달러가 됨
    - 소득이 평탄구간인 9,100~1만 6,689달러 구간에 속하는 경우, 급여액이 3,094달러로 동일함
    - 소득이 점감구간인 1만 6,689~3만 6,051달러 구간에 속하는 경우, 급여액은 15.98%의 급여감소율에 따라 감소하고 소득이 3만 6,051달러를 초과하면 세액 공제 금액은 0가 됨
  -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Earned Income)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경됨
- 'Earned Income'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번역되고, 이때 근로소득의 의미는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과 같은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과 대비되는 개념임
  -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급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을 '근로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음

〈표 Ⅲ-2〉 EITC 급여액 산정표

(단위: 달러)

자녀 수	근로소득(A)	구간	세액공제액
3 이상	1~12,779	점증구간	$45\% \times A$
	12,780~16,689	평탄구간	5,751
	16,690~43,997	체감구간	$5,751 - 21.06\% \times (A - 16,690)$
	43,998~	세액공제 없음	0
2	1~12,779	점증구간	$40\% \times A$
	12,780~16,689	평탄구간	5,112
	16,690~40,963	체감구간	$5,112 - 21.06\% \times (A - 16,690)$
	40,964~	세액공제 없음	0
1	1~9,099	점증구간	$34\% \times A$
	9,100~16,689	평탄구간	3,094
	16,690~36,051	체감구간	$3,094 - 15.98\% \times (A - 16,690)$
	36,052~	세액공제 없음	0
0	1~6,069	점증구간	$7.65\% \times A$
	6,070~7,589	평탄구간	464
	7,590~13,659	체감구간	$464 - 7.65\% \times (A - 7,590)$
	13,660~	세액공제 없음	0

- 따라서 미국의 EITC 제도에서 의미하는 'Earned Income'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는 그 의미가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표기함
- 또한 미국의 EITC 제도 내에서 'Employee'는 우리나라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지만 좀 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소득자'로 표기함

## 다.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적용기준

### 1) 개요

- 미국의 EITC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EITC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신청자격, 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동일

하계 취급하고 있음

- 이는 소득세 과세체계에 있어서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EITC 목적상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은 자신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 또는 종교단체 종사자임

- 일반적으로 자영업자(Self-Employed)란 개인회사(Sole Proprietor)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자격으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Trade or Business)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 시간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불규칙적인 잡역을 하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개인도 자영업자가 될 수 있음
-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 사업체의 상호명이나 형식을 갖춘 사업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타인에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소득과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음

## 2) 신청자격<sup>42)</sup>

□ EITC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요건과 자녀의 유무에 따른 추가적인 요건이 있음

-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IRS에서 제공하는 납세자구분별 급여산정표에 따라 EITC 급여액이 결정됨

### 가) 일반요건

□ 일반요건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임

□ 2011 과세연도의 적격자녀(Qualifying Children) 수에 따른 소득<sup>43)</sup>금액은 다음 금액

---

42) 신청자격은 IRS, Publication 596(Earned Income Credit)을 기초로 2011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기술함

미만이어야 함

- 적격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43,998달러 미만(부부합산신고는 49,078달러)
- 적격자녀가 2명인 경우는 40,964달러 미만(부부합산신고는 46,034달러)
- 적격자녀가 1명인 경우는 36,052달러 미만(부부합산신고는 41,132달러)
- 적격자녀가 없는 경우는 13,660달러 미만(부부합산신고는 18,740달러)

-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는 자가 EITC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 시 부부합산신고(Joint Return)의 납세자구분(Filing Status)을 선택하여야 함
  -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EITC를 신청하려면 부부별도신고(Married Separately)는 선택할 수 없음
  - 그러나 배우자가 1년 중 6개월을 떨어져서 사는 경우, Head of Household<sup>44)</sup>의 납세자구분은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EITC를 신청할 수 있음
-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외소득을 총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그 금액과 무관하게 EITC는 신청할 수 없음
-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투자소득금액이 3,150달러를 초과하면 EITC를 신청할 수 없음
  - 개인의 투자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EITC를 신청하는 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제출 시 Worksheet 1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worksheet 1은 투자소득을 ① 이자와 배당, ② 자본이득, ③ 로열티와 개인자산으로부터의 임대소득, ④ 수동적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는 서식임
- 그 외의 요건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일년 내내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며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함

43) 소득이란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1040, 1040EZ, 1040A)의 작성을 통해 산출되는 소득금액임

44) Head of Household는 결혼하지 않고 부양자와 동일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의 납세자구분임

나) 추가요건

- 추가요건은 자녀의 유무에 따른 요건으로, 자녀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① 자녀가 적격자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② 적격자녀에 대하여 2인이 동시에 EITC를 신청할 수 없으며 ③ EITC를 신청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될 수 없음
  
- 적격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요건(Relation Test), 연령요건(Age Test), 거주지요건(Residency Test), 합산신고요건(Joint Return Test)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관계요건이란 자녀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자녀, 입양자녀, 의붓자녀, 수양자녀,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 조카, 의붓형제·자매의 자녀를 포함함
  - 연령요건이란 자녀의 연령에 관한 것으로 과세연도 말에 19세 미만이고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배우자)보다 어려야 함
    - 정규학생(Full Time Student)인 경우 24세 미만으로 납세자(또는 납세자의 배우자)보다 어려야 함
    - 단, 영구적인 장애인인 경우에 연령에 관계없이 연령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봄
  - 거주지요건이란 적격자녀가 미국 영토 내에서 과세기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임
  - 합산신고요건이란 결혼한 자녀가 배우자와 합산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납세자가 18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과세연도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였고 딸의 배우자는 군대에 있는 상황에서, 딸과 딸의 배우자가 소득세 신고에서 부부합산신고를 했다면 딸은 적격자녀가 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환급신청을 위해 부부합산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용함
  
- 적격자녀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①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② 다른 사람의 부양자(Dependent) 또는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③ 해당 과세연도 중 반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했어야 함

〈표 Ⅲ-3〉 미국의 EITC 신청자격

	적용 요건
일 반 요 건	①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 ② 소득세 납세신고 시 부부합산신고 ③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신청할 수 없음 ④ 투자소득은 3,150달러 이하 ⑤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함 ⑥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일년 내내 거주 외국인이어야 함 ⑦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추 가 요 건	<적격자녀 있는 경우> ① 적격자녀요건: 관계요건, 연령요건, 거주지요건, 합산신고요건 ② 1명의 적격자녀에 대해 2인이 동시에 EITC를 신청할 수 없음 ③ EITC를 신청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될 수 없음
	<적격자녀 없는 경우> ① 신청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 ② 신청자는 다른 사람의 부양자가 될 수 없음 ③ 신청자는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될 수 없음 ④ 신청자는 일년 중 반년 이상 미국에 거주

자료: IRS, Publication 596(Earned Income Credit)

### 3) 소득 범위<sup>45)</sup>

- EITC 목적상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되는 것은 ① 임금소득자 급여 등, ② 자영업(Self-Employment)에서의 순손익, ③ 법정임금소득자(Statutory Employee)로서 수취하는 소득임

#### 가)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 Form 1040의 부속서류인 Schedule SE를 제출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d), 교회종사자(Member of the Clergy or Church Employee)는 EIC Worksheet B를 통해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산출함
- 자영업자 및 교회종사자의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농업소득, 자원보전프로

45) IRS, Publication 596, "Earned Income Credit(EIC)"

그램지급금, 사업소득의 합계금액임

〈표 Ⅲ-4〉 자영업의 근로소득

대상자	자영업의 근로소득 범위
Schedule SE 제출의무가 있는 자영업자, 교회종사자	농업에서 발생한 순손익(Net Farm Profit or Loss from Schedule F) + 자원보전프로그램 지급금(Conservation Reserve Program Payment,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사업에서 발생한 순손익(Net Profit or Loss from Schedule C) + 교회임금소득자 소득(CHurch Employee Income from W-2) - SE tax중 고용주 부담부분 공제(SE tax ≤ 14,204.4: SE tax × 57.51% SE tax > 14,204.4: SE tax × 50% + \$1,067) = 근로소득(Earned Income)
Schedule SE 제출의무가 없는 자영업자 <sup>1)</sup>	농업순익(Net Farm Profit or Loss from Schedule F) + 사업순익(Net Profit or Loss from Schedule C) = 근로소득(Earned Income)

주: 1) 자영업의 순손익이 400달러 미만인 경우  
 자료: IRS, 1040 Instruction 2011, p.50

- 목회자 급여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주택의 임대가치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이 아니지만 EITC 산출을 위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에는 포함됨
- 다음의 소득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되지 않음<sup>46)</sup>
  - 교도시설 수감자의 급여
  - 이자, 배당, 연금(Pensions and Annuities)
  -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
  - 철도퇴직급여(Railroad Retirement Benefit(장애급여 포함))
  - 위자료, 자녀양육비, 사회복지급여(Welfare Benefits), 임금소득자상해급여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실업급여
  - 비과세 위탁양육급여(Foster Care Payments)
  - 참전군인급여(Veteran's Benefits), 참전군인 재활급여(Veterans Affairs Rehabilitation

46) IRS, Pub 596, Earned income Credit

Payment) 등

- 교도시설 수감자로서 작업을 수행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소득세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EITC를 위한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
  - 수감자의 외부통근이나 사회복지훈련시설에서 수행한 작업의 대가로 수취한 것도 동일함
- 비과세인 근로복지지불금(Workfare Payments)은 사회보장급여의 하나로서 EITC 목적상 근로소득이 아님
  - 근로복지지불금이란 연방정부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에 의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또는 기초자치단체 사무소에서 특정 근로활동을 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 특정근로활동이란 민간부문에서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경험활동(공공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수선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동임
- 고용주가 임금소득자에게 지급한 급여과 공제 내역을 기록한 양식인 W-2에는 보고되지 않는 장학금 등(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은 EITC를 위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비적격연금 등(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Plan이나 Nongovernmental Section 457 plan으로부터의 연금)은 소득세신고서에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EITC를 위한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

#### 나) 법정임금소득자의 근로소득

- 법정임금소득자(Statutory Employee)란 판례법상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 해당하지만 고용과 관련된 관련 세금 목적상 법에 의해 임금소득자로 처리되는 경우임<sup>47)</sup>

- 세금 목적상 법정임금소득자로 인정되려면 4가지 업무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내용상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업무유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대리인으로 또는 수수료를 받고 음료(우유 제외), 고기, 채소, 과일, 빵을 배달하는 운전자, 세탁물의 수거와 배달을 하는 운전자
    - 전일근무제로 하나의 보험회사를 위해 생명보험 및 연금을 판매하는 보험판매원
    - 자신의 일에 대해 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이 공급하고 환불받는 재료와 제품으로 집에서 일하는 개인
    - 전일근무제로 도매상, 소매상, 건설회사, 호텔 및 식당 등의 관리자(operator)를 상대로 하는 판매원(판매된 재화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구입자의 사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것이어야 함)
  - 업무내용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함
    - 용역 계약은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개인적인 활동에 의해 수행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함
    -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는 없어야 함(차량 등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는 제외)
    - 용역은 동일한 회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함
  
- 납세자가 세제상 인정되는 법정임금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가 임금소득자에게 발행하는 Form W-2를 통해 파악하여야 함
  - 법정임금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소득세 신고서의 첨부서식인 Form 1040의 Schedule C(Profit or Loss from Business) 또는 Schedule C-EZ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 법정임금소득자의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고용주가 임금소득자에게 발행하는 Form W-2상 과세소득금액임

47) IRS, Pub 15-A "Employer's Supplemental Tax Guide," 2012.

#### 다) 임금소득자의 근로소득

- '임금소득자 급여 등'이란 임금(wages), 급여(salaries), 팁(tips)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소득인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함
  - 따라서 비과세 임금소득자 급여인 자녀보육급여(Dependent Care Benefit),<sup>48)</sup> 입양급여(Adoption Benefit)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하지 않음
  -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소득자 급여 등은 Form W-2<sup>49)</sup>에 기재된 금액을 통해 파악함<sup>50)</sup>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파업수당도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됨
  
-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고용주의 장애퇴직급여제도(Disability Retirement Plan)에 의해 수취한 과세대상 장애급여는 최소퇴직연령에 도달할 때까지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해당되지만 최소퇴직연령 이후에 받게 되는 연금 급여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최소퇴직연령은 장애가 없는 자가 연금(Pension or Annuity)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연령임
    - 과세대상 장애급여는 최소퇴직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1040A)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취하는 장애보험금은 최소퇴직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하지 않음
  
- 전투지역에 근무 중인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위험특별수당(Combat Pay)은 비과세소득이지만 EITC 산정을 위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에는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

48) 자녀보육급여(Dependent Care Benefit)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탁아시설 비용(Daycare Expenses)으로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W-2 Statement에 기입하여야 함

49) W-2는 고용주가 임금소득자에게 발행하는 'Wage and Tax Statement'로 1년간의 급여와 공제를 기록한 양식임. W-2는 급여를 지급한 다음해 1월말까지 임금소득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함

50) W-2의 금액을 소득세 신고서(1040EZ, 1040A, 1040)를 통해 보고함

- 일단 포함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수취한 모든 비과세 위험특별수당을 포함하여야 함
  - 부부합산신고를 하고 납세자와 그의 배우자가 모두 비과세 위험특별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액공제금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비과세 위험특별수당을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하는 것은 EITC 금액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선택 이전에 포함 여부에 따른 EITC 금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포함 여부에 따른 EITC 급여액의 증가 또는 감소는 총근로소득(Earned Income) 금액, 납세자구분, 적격 부양자녀의 수에 의해 달라짐
  - 위험특별수당을 제외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다음 금액 미만이면 위험특별수당을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고 다음의 금액 이상이면 위험특별수당을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음
    - 자녀가 없는 경우 6,050달러
    - 자녀 1인의 경우 9,100달러
    -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1만 2,750달러

임금소득자 급여 등(Form 1040, line 7)

- W-2에 보고되지 않은 과세대상 장학금, 보조금(Fellowship Grant)
- 교도시설 수감자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
- 연금소득(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Plan 및 Nongovernmental Section 457 Plan)

+ 비과세 특별위험수당(Earned Income에 포함을 선택한 경우)

= 근로소득(Earned Income)

자료: IRS, 1040 Instruction 2011, p.47

#### 4) 소득 산정

-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은 과세소득의 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순손익을 기초로 하므로 자영업자의 과세소득 산정 절차를 살펴봄
  - 자영업자란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짐
-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의 첨부 양식인 Schedule C를 통해 신고함
  -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순손익이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됨

[그림 Ⅲ-2] 미국의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 산정

총수입(Total Gross Receipt; 판매대금 + 제3자 지급액 + 법정임금소득자의 소득) - 환입 등(Returns and Allowances) - 제품원가(Cost of Goods Sold)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 총이익(Gross Profit) + 기타 소득(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연료세(Gasolin or Fuel Tax)의 세액공제 및 환급액 포함)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 총소득(Gross Income) - 사업비용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 순손익(Net Profit or Loss)
---

자료: IRS, Schedule C

- 총수입은 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사업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소득을 포함함
  - 총수입은 일반적으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지만 그 외의 형태, 예를 들면 자산이나 용역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포함함
- 총소득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순손익임
  - 사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광고비,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 커미션과 수수료, 감가상각비와 감모상각비, 임금소득자 복지 프로그램(Employee Benefit Program), 보

험료, 이자비용, 법률관련 비용, 사무실 비용, 임대료, 임금소득자 연금 및 임금소득자 이익분배제도(Pension and Profit-sharing Plans),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세금 및 라이선스비, 출장비, 접대비, 공공요금, 임금소득자 급여, 자가주택의 업무 사용비용 등임<sup>51)</sup>

-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은 뇌물, 사례금, 자선기부금, 철거비용, 로비 비용, 벌과금, 사적 비용, 정치기부금, 내용연수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임

□ 근로소득의 경우, 고용주가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소득의 신고·납부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개인 납세자가 세금을 추정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 모든 개인 납세자는 신고서식 Form 1040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함

- 근로소득자는 추가적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함
-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신고서식인 Form 1040 작성 시 Schedule C 또는 C-EZ를 작성하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Schdule F를 작성하여 다른 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세로 신고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추정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5) 신청 및 지급

□ EITC를 신청하려면 신청요건을 갖추고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만큼의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지만 EITC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1) IRS, Schedule C(2011)

IRS, 2011 Tax Guide for Small Business(for Individual who use Schedule C or C-EZ)

- EITC 신청서는 소득세 신청서인 Form 1040을 제출할 때 각종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함
  - Schedule EIC는 적격자녀가 있는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적격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서식임
  - EIC Worksheet B는 자영업자, 종교단체(clergy)의 회원, Schedule SE를 제출하는 교회 종사자, Schedule C 또는 C-EZ를 제출하는 법정임금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산출하는 서식임
  - EIC Worksheet A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종교단체(clergy)의 회원 · Schedule SE를 제출하는 교회 종사자 · Schedule C 또는 C-EZ를 제출하는 법정임금소득자가 아닌 자가 근로소득을 산출하는 서식임
  
- 자영업의 순손익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Schedule SE를 작성하고 자영업세(SE tax)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Schedule SE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EITC를 신청할 수 없음
  - 자영업자는 자영업의 순손익을 계산할 때, 세법상 인정되는 사업비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정임금소득자는 Schedule C 또는 C-EZ를 통해 급여와 비용을 신고하며, Schedule SE는 작성하지 않음
  
-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신청을 하고 IRS가 EITC 규정에 대한 부주의 또는 고의적 무시로 에러 결정을 한 경우 2년간 EITC를 신청할 수 없음
  - 에러의 사유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간 EITC를 신청할 수 없음

## 라. 관련 통계

- 1995~2010 기간의 EITC 신청건수 및 급여액은 <표 III-5>와 같음
  - 동 기간 중 1997, 1999, 2000년을 제외하고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급여액도 매년 증가하였음
    - 특히 2002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표 Ⅲ-5〉 연도별 EITC 신청 및 급여액

(단위: 백만건, 십억달러, %)

연도	신청		급여액	
	건수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5	19.3		26.0	
1996	19.5	1.04	28.8	10.77
1997	19.4	-0.51	30.4	5.56
1998	19.7	1.55	31.6	3.95
1999	19.3	-2.03	31.9	0.95
2000	19.3	0.00	32.3	1.25
2001	19.6	1.55	33.4	3.41
2002	21.7	10.71	38.2	14.37
2003	22.0	1.38	38.7	1.31
2004	22.3	1.36	40.0	3.36
2005	22.8	2.24	42.4	6.00
2006	23.0	0.88	44.4	4.72
2007	24.6	6.96	48.5	9.23
2008	24.8	0.81	50.7	4.54
2009	27.0	8.87	59.2	16.77
2010 <sup>1)</sup>	27.7	2.59	60.9	2.87

주: 1) Preliminary Data

자료: 1995~2009는 IRS, Tax Statistic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중 Complete Year Data Table 4, 2010년은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Preliminary Data 참조

- 2002년의 경우 신청건수와 급여액이 각각 10.71%, 14.37%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신고로 인한 불이익(Marriage Penalties)을 제거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2001년 이전까지 EITC는 결혼으로 인한 상당한 불이익(Marriage Penalties)이 존재하였음
    - 즉, EITC를 받고 있는 독신부모가 결혼을 하면 그 배우자 소득이 가산되어 세액 공제 금액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서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점감구간 기준 금액을 독신 납세자보다 3천 달러 인상하였음

– 이러한 기준금액 조정으로 인해 2002년도 신청건수 및 급여액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2009년의 경우, 신청건수와 급여액이 각각 8.87%, 16.77% 증가하였음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서는 2009년부터 부부합산신고의 점감구간 기준 금액을 독신납세자보다 5천달러 높게 인상함으로써 대상자 및 급여액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EITC는 현재 SNAP(Supplemental Nutritional Assistance Program) 다음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현금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큰 지출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은 잠정치로서 2,570만가구가 약 609억달러 규모의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2. 캐나다

### 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WITB<sup>52)</sup>

□ 캐나다의 근로장려세제인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sup>53)</sup>의 사회보장제도 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살펴봄

□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는 연금(보편연금과 공공부조연금, 공적연금, 민영연금), 노동보험(산재보험, 실업보험), 사회부조 프로그램과 아동급여, 의료서비스로 이루어짐

○ 사회보장제도를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분해 볼 때,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부조프로그램과 아동급여임

– 사회부조와 아동급여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프로

52) 조영훈(2011)에 기초하여 기술함

53)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는 캐나다의 근로장려급여임

그럼과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사회부조체계의 핵심인 CST(Canada Social Transfer)는 주정부가 운영을 하고 연방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임<sup>54)</sup>
  - 각 주별로 수급자격이나 급여수준이 상이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
    - 수급연령은 대체로 18세에서 65세 사이로 규정함
    - 수급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실업자로 구분함
    - 근로가 가능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상담, 구직, 지역서비스 활동 등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사회부조 급여를 제공함
  - 2007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를 시행하고 있음
    - 고용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급여제도임
  
- 아동급여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CCTB(Canada Child Tax Benefit)와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중심으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주정부가 제공하는 아동급여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아동급여인 UCCB<sup>55)</sup>와 같은 보편적 프로그램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CCTB<sup>56)</sup>는 전통적 의미의 공공부조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있음
    - 그러나 소득심사 과정을 거치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급여가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일부로 간주됨
  
-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는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근로장려

54) 캐나다에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가 있으므로 13개의 사회부조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55)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6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임

56) 연방정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중산층 이하의 가족에게 기초급여를 제공하고 주정부는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임

세제와 유사한 제도이지만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  
중임

- 근로소득(Working Income)이 있는 저소득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급여제도임
-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 3천캐나다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독신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 나. WITB 제도

### 1) 도입배경

- 캐나다의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 이하 'WITB'라 함)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로,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독신(Individuals)과 가구(Families)의 세금을 경감하고 노동 참여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되었음
- 캐나다의 WITB는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 이후 큰 제도의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제도가 도입된 2007년에는 3천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20%의 급여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독신근로자는 최대 5백캐나다달러,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1천캐나다달러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
  - 2009과세연도에 급여증가율은 20%에서 25%로, 급여액은 510캐나다달러에서 925캐나다달러로 인상하였고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도 매년 증가하였음

### 2) 급여체계<sup>57)</sup>

- WITB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순소득(Net Income)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급여액이 감소하는 형태이어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미국의

57) <http://www.cra-arc.gc.ca/bnfts/wtb/menu-eng.html>

EITC 제도와 마찬가지로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이루어짐

- 2012 과세연도 현재 독신의 경우, 3천~6,880캐나다달러는 점증구간, 6,880~1만 1,011캐나다달러는 평탄구간, 1만 1,011~1만 7,478캐나다달러는 점감구간임

〈표 Ⅲ-6〉 캐나다 WITB의 급여체계(2007년~2012년)

(단위: 캐나다달러, %)

	점증구간	급여 증가율	최대 급여액	평탄구간	점감구간	급여 감소율
2007 독신 가구	3,000~5,500	20	500	5,500~9,500	9,500~12,833	15
	3,000~8,000	20	1,000	8,000~14,500	14,500~21,167	15
2008 독신 가구	3,000~5,500	20	510	5,500~9,681	9,681~13,081	15
	3,000~8,450	20	1,90	8,450~14,776	14,776~21,569	15
2009 독신 가구	3,000~6,700	25	925	6,700~10,500	10,500~16,667	15
	3,000~9,720	25	1,680	9,720~14,500	14,500~25,700	15
2010 독신 가구	3,000~6,724	25	931	6,724~10,563	10,563~16,770	15
	3,000~9,760	25	1,690	9,760~14,587	14,587~25,854	15
2011 독신 가구	3,000~6,776	25	944	6,776~10,711	10,711~17,004	15
	3,000~9,856	25	1,714	9,856~14,791	14,791~26,218	15
2012 독신 가구	3,000~6,880	25	970	6,880~11,011	11,011~17,478	15
	3,000~10,048	25	1,762	10,048~15,205	15,205~26,952	15

주: 1. Alberta, British Columbia, Nunavut, Quebec 주를 제외한 캐나다 대부분의 주 기준

2.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한부모인 경우도 포함

자료: <http://www.taxtips.ca>

[http://www.cra-arc.gc.ca/bnfts/wtb/fq\\_pymnts-eng.html](http://www.cra-arc.gc.ca/bnfts/wtb/fq_pymnts-eng.html)

- 근로소득(working income)이 3천캐나다달러를 초과하고 기타 적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Income Tax and Benefit Return)를 통해 WITB를 신청할 수 있음
  - 급여액은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급여(basic WITB)와 추가급여(WITB Supplement)로 구분됨
    - 추가급여는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적용 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 급여액은 근로소득, 부양가족 등에 따라 산출되며, 우리나라나 미국과 다른 점은 3천 캐나다달러의 최저 근로소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 또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WITB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는 자신의 추정 급여액의 50%까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급여액은 당해 과세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매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지급함

### 3) 급여액의 산정

- 일부 주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WITB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연도 말에 납세자가 거주한 지역을 기준으로 WITB 금액을 산정함
  - 따라서 급여액은 배우자 관계, 거주지 지역, 근로소득, 적격한 부양자의 유무, WITB 장애인 추가급여의 적용 여부 등에 의해 산출함
- WITB 급여액은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sup>58)</sup>에서 적용되는 급여액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기준으로, 자녀 없는 독신(Single)은 근로소득이 6,880~1만 1,011캐나다달러 구간에 속하는 경우, 가구(Families)는 근로소득이 1만 48~1만 5,205캐나다달러 구간에 속하는 경우 WITB 최고금액이 지급됨
    - 독신은 근로소득이 1만 1,011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점차 감소하여 1만 7,477캐나다달러를 초과하면 WITB 금액은 0이 됨
    - 가구는 근로소득이 1만 5,205캐나다달러를 초과하면 점차 감소하고 2만 6,952캐나다달러를 초과하면 WITB 금액이 0가 됨
- 가구소득(Family Net Income)은 개인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고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차감한 금액임
  - UCCB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이

58) Alberta, Auebec, British, Columbia, Nunavut 제외한 지역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100캐나다달러를 지급함

〈표 Ⅲ-7〉 캐나다의 지역별 WITB 지급액(2012년)

(단위: 캐나다달러)

		Alberta, Quebec, British Columbia, Nunavut 제외지역	British Columbia	Nunavut	Alberta
WITB 최고액	독신	970	1,206	608	1,059
	가구	1,762	1,914	1,216	1,589
최저 근로소득	독신	3,000 초과	4,750 초과	6,000 초과	2,760 초과
	가구	3,000 초과	4,750 초과	6,000 초과	2,760 초과
점감구간 시작금액	독신	11,011	12,059	20,973	11,535
	가구	15,205	16,254	26,740	15,730
급여액이 0가 되는 소득	독신	17,478	19,153	36,173	18,595
	가구	26,952	27,513	41,940	26,323

자료: [http://www.cra-arc.gc.ca/bnfts/wtb/fq\\_pymnts-eng.html](http://www.cra-arc.gc.ca/bnfts/wtb/fq_pymnts-eng.html)

- WITB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추가급여(Disability Supplement)를 신청할 수 있음<sup>59)</sup>
  - 장애인추가급여의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1,150캐나다달러임
    - 장애인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란 환급불가능한 세액공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하고 장기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함

59) Form T2201,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를 통해 신청

〈표 Ⅲ-8〉 WITB 장애인 추가급여(2012년)

(단위: 캐나다달러)

		Alberta, Quebec, British Columbia, Nunavut 제외 지역	British Columbia	Nunavut	Alberta
WITB 장애인 추가금액 최고액 <sup>1)</sup>		485	540	304	485
최저 근로소득	독신/ 가구	1,150 초과	2,295 초과	4,800 초과	910 초과
점감구간 시작금액	독신	17,478	19,154	36,178	18,596
	가구	26,950	27,511	41,946	26,321
급여액이 0이 되는 소득	독신	20,711	22,330	38,205	21,829
	가구	30,183	30,687	43,973	29,554

주: 1) 부양자를 제외한 적격한 개인별 금액임

자료: [http://www.cra-arc.gc.ca/bnfts/wtb/fq\\_pymnts-eng.html](http://www.cra-arc.gc.ca/bnfts/wtb/fq_pymnts-eng.html)

## 다. 자영업자에 대한 WITB 적용기준

### 1) 개요

- 캐나다의 WITB 제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신청자격 및 소득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WITB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근로소득은 고용에서 발생한 소득과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산출함
- 임금소득자(employee)와 자영업자(self-employed)의 구분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캐나다는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급여를 지급하는 자 간의 통제 관계,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등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음

- 통제관계에 있어서 자영업자는 정해진 틀 안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타인의 감시를 받지 않음
  -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용역을 제공할 수 있고 근로에 대한 제안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음
- 자영업자는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조달함
- 자영업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타인을 고용할 수 있음
- 자영업자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등 재정적인 책임을 짐
- 자본투자에 대한 책임과 자신이 고용한 자에 대한 관리를 책임짐

## 2) 신청자격

- WITB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거주 요건: 과세연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자
  - 연령 또는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당해 과세연도 말 현재 19세 이상이거나 배우자<sup>60)</sup>와 동거 중인 자 또는 부양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
    - 즉, 배우자(또는 파트너)가 있거나 적절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9세 미만 이더라도 WITB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최저 근로소득 요건: 당해 과세연도에 고용 또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Working Income)이 있는 자
    - WITB를 신청하려면 3,000캐나다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만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하여 3,000캐나다달러 이상인지 판단함
- WITB 목적상, 적절한 부양자녀란 과세연도 말 현재 납세자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고 19세 미만이며 WITB 신청자가 아닌 자녀임

60) '배우자'는 'Common-law Partner'를 포함하며, 'Common-law Partner'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임

- ① 연속해서 12개월 이상 부부관계로 동거하는 자
- ② 출산이나 입양에 의한 자녀의 부모관계인 자
- ③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자

○ Form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을 작성함으로써 WITB 목적상 적합한 부양자로 등록됨

□ WITB 목적상 적합한 배우자는 ① 12월 31일 현재 동거 중인 배우자, ② 일년 내내 캐나다 거주자, ③ 지정된 교육기관에 연간 13주 이상의 정규학생이 아닌 자, ④ 연간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수감되지 않은 자, ⑤ 다른 나라의 외교관 등의 공무원 또는 해당 공무원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자임

□ WITB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학생, 수감자, 캐나다에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임

○ 적합한 부양자가 없고 지정된 교육기관에 연간 13주 이상 정규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교도소 및 이와 유사한 기관에 연간 90일 이상 수감된 자

○ 다른 나라의 외교관 등의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의 가족인 이유로 캐나다에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

○ 예를 들어, 23세이고 3세의 자녀가 있으며 2010년에 대학의 정규학생인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 연간 13주 이상의 정규학생이지만 적합한 부양자가 있으므로 WITB의 대상임

### 3) 소득범위

□ 근로소득(Working Income)은 당해 과세연도에 고용 또는 사업(손실은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개인 및 가구의 소득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소득을 포함함

○ 고용소득(Employment Income), 연구보조금(Research Grant, Gellowships), 장학금, 학비보조금, 소득에 포함되는 상금, 사업소득, 임금노동자보호법(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 Act)<sup>61)</sup>에 의해 수취한 금액, 자원봉사자 대가 중 면세소득인 1천

61)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임금소득자의 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때에는 고용주가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에 의해 파산 등을 한 경우 「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 Act」에 의해 자신의 임금, 휴가, 해고수당 등을 보호받을 수 있음

캐나다달러, 조세협약에 의해 과세가 면제되지 않는 기타 과세소득

[그림 Ⅲ-3] 캐나다의 근로소득 산정

고용소득(Employment Income) +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장학금 + 자영업 소득(손실은 제외) + 비상시 자원봉사자로서 수취한 대가 중 과세가 면제된 부분 = 근로소득(Working Income)
--

자료: Canada Revenue Agency, T1 Schedule 6

- 고용소득(Employment Income)에는 급여(Salary and Wages)와 상여금(Bonuses), 휴가수당(Vacation Pay)뿐만 아니라 기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을 포함함
  - 봉사료(Tips and Gratuities), 사례비, 이사 급여(Director's Fee), 경영자 급여(Management Fee), 유산관리인으로서 받은 수수료
  - 고용상태에서 수취한 수수료, 과세대상 보조금 및 급여 등
  - 실업급여 프로그램(Supplementary Unemployment Benefit Plan)에 의해 수취한 금액
  - 근로자복지 프로그램(Employment Benefit Plan)에 의해 지급된 것과 임금소득자신탁(Employee Trust)에 의해 분배된 것
  - 비상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1천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중개인에게 지급한 것 또는 교통비 등으로 지급한 것은 고용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고용소득에 퇴직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자영업 소득이란 사업, 전문직, 중개인, 농업, 어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임
  - 사업소득이란 이익창출을 위한 전문직, 거래상, 제조업 등의 모든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 4) 소득산정

- WITB 급여 산정을 목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상 자영업자 소득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과세소득 금액을 EITC의 기준 금액인 근로소득(Working Income)에 포함함
  - 근로소득(Working Income)의 산정에서 예외적인 규정은 비상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대가 1천캐나다달러는 면세소득이지만 근로소득에는 포함하는 것과, 자영업 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점임
    - 따라서 근로소득 산정 시 자영업 소득이 결손인 부분을 자영업 소득 외의 소득 과 상계할 수 없음
  
- 일반규정에 의한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 전문직소득, 수수료, 농업 및 어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임
  -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문직, 천직, 거래상, 제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기간을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분 역력을 따르고 있음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대부분 발생주의에 따라 산출함
  - 수수료를 받는 영업업무를 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d Commission Salesperson)는 현금주의에 따라 산출함

[그림 Ⅲ-4] 캐나다 자영업 소득 산정

사업소득/전문가소득 등(Business Income/Professional Income)
- 제조원가 및 직접비용(Cost of Goods Sold)
= 총이익(Gross Profit)
- 간접 비용(Expenses)
= 조정 전 순손익(Net Income(loss) before Adjustments)
± 조정항목(Adjustments)
= 순손익(Net Income(loss))

자료: 캐나다 국세청, "Employee or Self-Employed?"

### 5) 신청 및 지급

- WITB 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Schedule 6('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WITB 급여는 분기별로 지급됨
  
- 자격한 독신 및 가구는 WITB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선지급이 가능한 금액은 추정 WITB 최대 금액(장애인 추가급여 포함)의 50%까 지임
  - 선지급으로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세금신고서(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평가 시에 지급됨
  
- WITB 선지급은 연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인 Form RC201(Working Income Tax Benefit Advance Payment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일과 8월 31일 사 이에 신청하여야 함
  - WITB의 선지급은 매분기 첫달 5일임
  - 사례: 2012년 3월에 A와 B가 WITB 선지급을 신청하고 신청서는 2012년 4월에 처 리되어 360캐나다달러의 WITB를 선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만일 선지급 신 청의 처리 시점에 첫 번째 지급일(2012. 4. 5)이 이미 지났다면 A와 B는 3번으로 분 할된 금액인 120캐나다달러를 7월 5일, 10월 5일, 2013년 1월 4일에 수취하게 됨

- 선지급금을 수취한 자는 반드시 수취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선지급이 이루어지면 다음 과세연도 초에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상황은 하지 않음
  - 선지급금이 소득신고를 통해 확정된 WITB 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에 포함함

### 3. 영국

#### 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WTC<sup>6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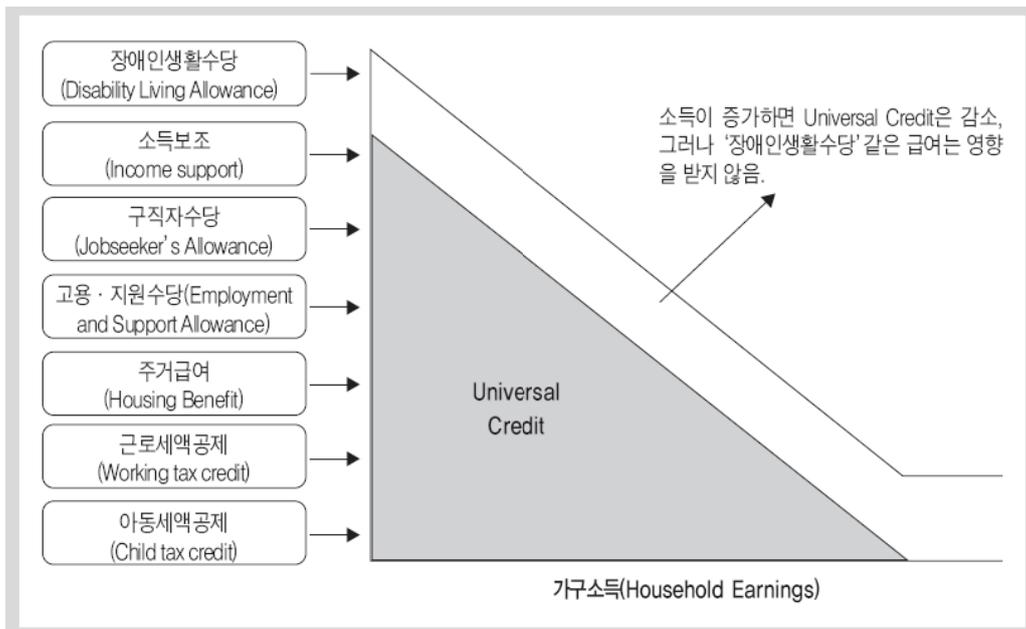
- 영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복지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리체계가 독립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서비스, 교육, 주택 등의 관련서비스가 상호보완적인 체계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임
  - 이러한 특성으로 사회보장 전반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노동연금 관련 분야, 보건·사회서비스 관련 분야, 빈곤계층의 주택 관련 분야, 장기요양 분야로 나뉘어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중에서 노동연금분야를 관장하는 노동부와 연금부문을 통합하여 만든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에서 고용, 빈곤, 아동, 장애 등의 대략적인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며, 2001년 통합·신설됨
- 노동연금부는 복지와 연금부문을 포괄하면서, 아동·장애인·실업자의 빈곤문제를 제고하고 노동의욕을 고취하며 취업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모든 공공부조와 사회보장급여는 노동연금부의 집행체계인 연금서비스(Pension Service)와 고용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장애인·돌봄자서비스(Disability and Carers Service)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 연금서비스는 실업수당, 장애급여, 고용 및 부양수당, 유족급여, 산재급여 등을 관

62) 이 절은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를 참고하여 기술함

장함

- 고용센터플러스는 노동인구의 복지와 노동여건을 돕고 취업알선을 관장하고, 장애인·돌봄자서비스는 장애인과 돌봄자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담당함
- 영국은 사회보장급여의 분야별 및 중앙·지방정부별로 분절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목적으로 UC(Universal Credit)체계를 2010년 도입하여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구조는 [그림 Ⅲ-5]와 같음

[그림 Ⅲ-5] 현행급여체계와 Universal Credit의 구조



자료: 임완섭(2011. 3), 보건복지포럼

원자료: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2010.10) Impact Assessment for Universal Credit, p.7, chart 1.

## 나. WTC 및 CTC 제도

### 1) 도입배경

- 영국의 근로장려세제는 1988년 FC(Family Credit)로 출발하여 1999년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로 발전하였고, 2003년 기존의 근로장려금과 아동장려금을 구분하여 WTC와 CTC로 이원화하는 체계로 발전함<sup>63)</sup>
  - 1988년 FC(Family Credit)는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는 자에게 그 수급기회가 주어짐
    - 그러나 수급자는 급격히 늘어났으며 장기수급자와 빈곤층 비중이 높아지며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 그래서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빈곤의 개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1999년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도입함
    - 주당 16시간 일할 경우 최대 수급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액이 감소되는 구조로서, 소득한도를 확대하며 수급범위를 넓혀감
  - 2003년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 인구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장려금의 성격에 따라 WTC와 CTC의 이원체제로 개편함
    - 이는 기존의 WFTC와 달리 부양아동이 없는 가구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하였고,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인 것임

### 2) 급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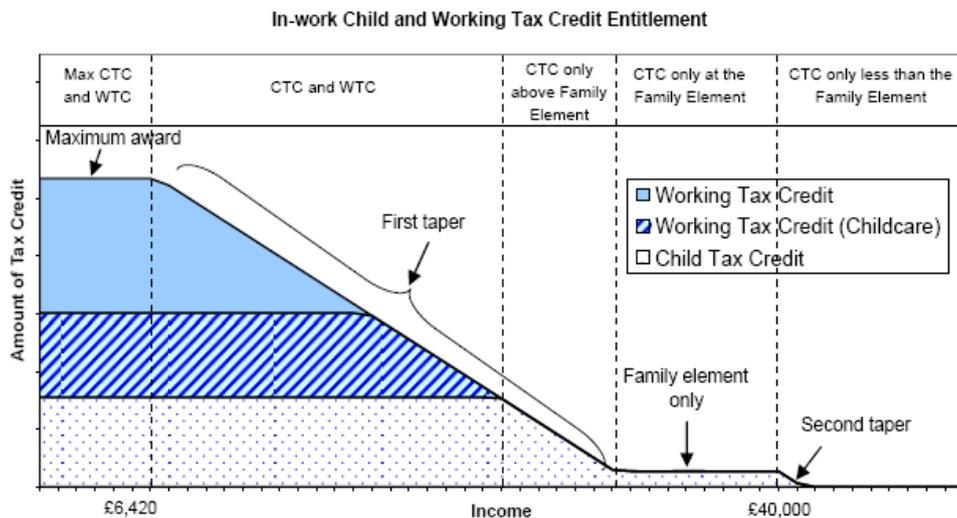
- 영국의 WTC(Working Tax Credit: 이하 WTC)와 CTC(Child Tax Credit: 이하 CTC)는 소득한도 6,420파운드보다 낮은 저소득자의 경우, 근로하고 있다면 WTC와 CTC를 모두 수혜할 수 있으며, 6,42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경우 41%씩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그림 III-6] 참조)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WTC와 CTC 중에서 WTC의 혜택이 사라지며, 소득이 일정

63) 김재진(2005) 및 송헌재·전영준(2011) 참조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WTC 중 Child Care 부분이 지원되다가 소득이 더 증가하면 CTC만 남게 되는 구조임

- WTC는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구분 없이 혜택을 부여함
- CTC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실질적으로 부양할 때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림 Ⅲ-6] 영국의 WTC와 CTC의 구조



주: 2차 한도인 £40,000는 폐지됨  
 자료: HM Revenue & Customs,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2012.

### 3) 급여액의 산정

#### 가) 개략적인 산정내용

-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요건을 추가하여 계산하게 되며 <표 Ⅲ-9>를 참조함
- 기본요건은 근로시간과 소득에 대한 자격요건이 충족(보통 자녀가 없는 독신 성인 기준)되면 부여되며 1,920파운드의 급여를 제공받으며 다음의 경우 추가하여

## 지급됨

- 부부나 한부모인 경우는 1,950파운드가 추가되며,
  - 3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790파운드가 추가되고
  - 장애가 있는 경우는 2,790파운드가 추가되고
  -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190파운드의 급여를 더 받게 됨
- 50세 이상의 경우 주당 16시간~30시간까지 일하면 1,365파운드를,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2,030파운드의 WTC를 지급하였는데, 2012년 과세연도부터 그 제도가 폐지됨<sup>64)</sup>
-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보육비용도 지급하는데, 아이 한 명의 경우는 주당 175파운드, 아이 두 명 이상의 경우는 주당 300파운드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함

- 급여액 산정 시에는 전년도 과세소득을 사용하며, 한도액은 6,420파운드로서 한도소득 미만의 경우에는 WTC의 최대급여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CTC도 최대급여액이 적용됨
- 소득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WTC가 감소하고 다음으로 CTC가 감소하며, 소득이 높아지면 WTC의 혜택은 사라지게 됨

64)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로할 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급여혜택이 존재했었으나 2012.4에 폐지됨

50세 이상 요건	폐지(2012.4)
- 주당 16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로	1,365파운드
-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2,030파운드

〈표 Ⅲ-9〉 WTC(Working Tax Credit) 지급률

WTC 요건 <sup>1)</sup>	설명	연간 최대금액 (2012.04.06기준)
기본요건	WTC의 기본자격 요건 충족 시	1,920파운드
- 부부 요건	부부의 경우 기본요건에 추가지급	1,950파운드
- 한부모 요건	혼자서 아이양육 시 기본요건에 추가지급	1,950파운드
- 30시간 요건 <sup>2)</sup>	30시간 이상 근로 시 추가지급	790파운드
- 장애 요건	장애 시 추가지급	2,790파운드
- 중증 장애 요건	중증장애 시 장애요건에 추가지급	1,190파운드
자녀보육 요건 (보육비용의 70%)	지출된 보육비용에 대해서 추가지급	주당 최대금액
- 아이 한 명	-	175파운드
- 아이 2명 이상	-	300파운드

주: 1) 자격요건은 기본요건과 자녀보육요건으로 구분되며, 기본요건은 우선적으로 기본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급여를 지급하고, 그 외 부부요건, 한부모요건, 30시간요건, 장애요건, 중증장애요건에 해당되면 추가급여를 지급함  
 2) 아이를 가진 부부의 경우, 합산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은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자료: Finance Bill, 2012.

〈표 Ⅲ-10〉 CTC(Child Tax Credit) 지급률

CTC 요건	설명	연간 최대금액 (2012. 4. 6기준)
<b>기본요건(가족요건)</b>	<b>한 명 이상의 아이를 부양하는 경우</b>	<b>545파운드</b>
- 아이 요건	아이당 지급되며 기본요건에 추가지급	2,690파운드
- 장애아 요건	장애아당 추가지급	2,950파운드
- 중증장애아 요건	중증장애아당 장애요건에 추가지급	1,190파운드

자료: Finance Bill, 2012.

〈표 Ⅲ-11〉 WTC와 CTC의 소득기준

(단위: 파운드, %)

한도 및 세율	2011년 4월 기준	2012년 4월 기준
최초 소득한도	6,420	6,420
최초 소득 이상 감소율	41	41
두 번째 소득한도	40,000	폐지
두 번째 소득 이상 감소율	41	-
CTC만 존재	15,860	15,860
소득증가 고려 기준	10,000	10,000
소득감소 고려 기준	-	2,500

자료: Finance Bill, 2012.

〈표 Ⅲ-12〉 아동수당(Child Benefit rates)

(단위: 파운드)

구 분	2011년 4월 기준	2012년 4월 기준
첫째 또는 한 아이 혜택	20,30	20,30
기타 아이	13,40	13,40

자료: Finance Bill, 2012.

## 나) 자격기준별 소득에 따른 산정내용

- WTC와 CTC의 자격기준별 소득에 따른 급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근로 여부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아이의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다양하게 결정됨
  - 먼저 근로를 하지 않고 아이만 있는 경우의 자격기준이 존재하고,
  - 다음 근로를 하면서 아이가 없는 경우의 자격기준이 구분되고,
  - 마지막으로 근로를 하면서 아이가 있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음

(1) 근로를 하지 않고 아이만 있는 경우의 자격기준

〈표 Ⅲ-13〉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를 하지 않고 아이만 있는 경우)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	1 아이	2 아이	3 아이
0	3,235	5,925	8,615
5,000	3,235	5,925	8,615
8,000	3,235	5,925	8,615
10,000	3,235	5,925	8,615
15,000	3,235	5,925	8,615
20,000	1,540	4,230	6,920
25,000	0	2,180	4,870
30,000	0	130	2,820
35,000	0	0	770
40,000	0	0	0

자료: www.direct.gov.uk

(2) 근로를 하고 아이가 없는 경우의 자격기준

- 근로를 하면서 아이가 없는 경우의 자격기준은 장애의 여부에 따라 나뉘고, 장애를 가진 경우에 16시간 이상 근로와 30시간 이상 근로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됨
- 25세 이상이며 장애가 없는 경우(독신/부부 구분) 소득에 따른 대략적인 급여액은 다음과 같음
  - 연간소득 9,500파운드까지는 최대 급여를 받는데, 독신·25세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1,450파운드를 지급받으며, 부부·25세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3,405파운드를 지급받게 됨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은 감소하며, 1만 8천파운드까지 소득이 올라가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 25세 이상으로 근로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소득에 따른 대략 급여액은 다음과 같음

- 장애를 가진 자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소득 8천파운드까지는 최저임금한도까지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

〈표 Ⅲ-14〉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 장애: ×, 25세 이상)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	독신, 25세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부부, 25세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9,500	1,450	3,405
10,000	1,245	3,200
11,000	835	2,790
12,000	425	2,380
13,000	15	1,970
14,000	0	1,560
15,000	0	1,150
16,000	0	740
17,000	0	330
18,000	0	0

주: 지급수준은 당해연도의 연간 지급총액이며, 2012년 4월 6일~ 2013년 4월 5일까지의 연간소득기준이며 부부의 경우는 합산된 소득을 의미함

자료: www.direct.gov.uk

〈표 Ⅲ-15〉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 장애: ○, 25세 이상)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	독신, 16시간 이상 근로(주당)		부부, 16시간 이상 근로(주당)	
	16~29시간 근로(주당)	30시간 근로(주당)	16~29시간 근로(주당)	30시간 근로(주당)
5,100	4,715	(최저임금한도)	6,665	(최저임금한도)
8,000	4,065	(최저임금한도)	6,020	(최저임금한도)
9,500	3,450	4,245	5,405	6,195
10,000	3,245	4,040	5,200	5,990
12,000	2,425	3,220	4,380	5,170
14,000	1,605	2,400	3,560	4,350
16,000	785	1,580	2,740	3,530
18,000	0	760	1,920	2,710
20,000	0	0	1,100	1,890
22,000	0	0	280	1,070
24,000	0	0	0	250
26,000	0	0	0	0

주: 지급수준은 당해연도의 연간 지급총액이며, 2012년 4월 6일~ 2013년 4월 5일까지의 연간소득기준이며 부부의 경우는 합산된 소득을 의미함

자료: www.direct.gov.uk

(3) 근로를 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의 자격기준

- 근로를 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의 자격기준은 자녀양육비용의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차이가 존재하며, 아이를 가진 부부의 경우는 합산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이 어야 부부요건이 추가되며, 부부 중 한 명은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 자녀양육비용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서 실제 지출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음

① 아이가 있고 1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자녀양육비용이 있는 경우 자격기준

- 아이가 한 명인 경우 주당 양육비용 지출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짐

〈표 Ⅲ-16〉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_1명, 양육비용: ○)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	£90 보육비용_주당	최대 보육비용 (£175)
0	10,385	13,480
5,100	10,385	13,480
9,500	9,915	13,010
10,000	9,710	12,805
15,000	7,660	10,755
20,000	5,610	8,705
25,000	3,560	6,655
30,000	1,510	4,605
35,000	0	2,555
40,000	0	505
45,000	0	0

주: 지급수준은 당해연도의 연간 지급총액이며, 2012년 4월 6일~2013년 4월 5일까지의 연간소득기준이며 부부의 경우는 합산된 소득을 의미함  
 자료: www.direct.gov.uk

- 아이가 두 명인 경우의 주당 양육비용에 따른 급여액은 다음과 같음

〈표 Ⅲ-17〉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_2명, 양육비용: ○)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	£150 보육비용_주당	최대 보육비용 (£300)
0	15,260	20,720
5,100	15,260	20,720
9,500	14,790	20,250
10,000	14,585	20,045
15,000	12,535	17,995
20,000	10,485	15,945
25,000	8,435	13,895
30,000	6,385	11,845
35,000	4,335	9,795
40,000	2,285	7,745
45,000	235	5,695
50,000	0	3,645
55,000	0	1,595
60,000	0	0

주: 지급수준은 당해연도의 연간 지급총액이고, 2012년 4월 6일~2013년 4월 5일까지의 연간소득기준이며 부부의 경우는 합산된 소득을 의미함

자료: www.direct.gov.uk

□ 아이가 세 명인 경우의 주당 양육비용에 따른 급여액은 다음과 같음

〈표 Ⅲ-18〉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_3명, 양육비용: ○)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	£150 보육비용_주당	최대 보육비용 (£300)
0	17,950	23,410
5,100	17,950	23,410
9,500	17,480	22,940
10,000	17,275	22,735
15,000	15,225	20,685
20,000	13,175	18,635
25,000	11,125	16,585
30,000	9,075	14,535
35,000	7,025	12,485
40,000	4,975	10,435
45,000	2,925	8,385
50,000	875	6,335
55,000	0	4,285
60,000	0	2,235
65,000	0	185

주: 지급수준은 당해연도의 연간 지급총액이고, 2012년 4월 6일~2013년 4월 5일까지의 연간소득기준이며 부부의 경우는 합산된 소득을 의미함

자료: www.direct.gov.uk

② 아이가 있고 1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자녀양육비용이 없는 경우 자격기준

〈표 Ⅲ-19〉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근로: ○, 아이: ○, 양육비용: ×)  
(단위: 파운드)

연간소득	아이 한 명	아이 두 명	아이 세 명
0	7,110	9,800	12,490
5,100	7,110	9,800	12,490
9,500	6,640	9,330	12,020
10,000	6,435	9,125	11,815
15,000	4,385	7,075	9,765
20,000	2,335	5,025	7,715
25,000	285	2,975	5,665
30,000	0	925	3,615
35,000	0	0	1,565
40,000	0	0	0

주: 지급수준은 당해연도의 연간 지급총액이며, 2012년 4월 6일~2013년 4월 5일까지의 연간소득기준이며 부부의 경우는 합산된 소득을 의미함  
자료: www.direct.gov.uk

다. 자영업자에 대한 WTC 적용기준

1) 개요

- 자영업자란 유일한 상인으로서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자산 및 채무의 전 범위에 책임을 가진 자를 의미함
  - 자영업이란 무역, 거래 및 전문직을 의미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세(무역 및 기타 소득)과세 대상이며 국민보험기여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자임
  - 또한 유일한 상인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고 사업의 자산 및 채무 전 범위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 영국에서 고용의 의미는 고용노동, 자영업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이 있는 고용을 의미함

- 자영업자의 소득은 거래상 모든 이익을 말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영업자의 자진신고에 의한 정보 제공을 기준으로 계산함
  - 파트너십의 이익은 공유한 비율에 따라 배분된 이익을 말함
  - 세액공제 목적의 거래소득은 과세가능이윤에 근거하는데, 과세가능이윤의 기간은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영국의 일반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에 의거하여 현금기준이 아닌 발생기준으로 과세가능이윤을 산정함
  -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편적인 자진신고납세의 고객정보에 의해서 제공됨
  
- 자영업자와 임금소득자의 과세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WTC를 적용할 때 근무시간은 주당 16시간 이상/주당 30시간 이상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됨
  -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산정과 비용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상이하지만, 최종적으로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세제혜택이 적용됨
  
- 자영업자는 자진신고납세 양식<sup>65)</sup>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농민과 예술가를 제외하고 모든 자영업자는 그들의 소득과 비용을 통한 순이익(이윤)을 기재하여야 함
  - 농민이나 정원사 및 창작예술가의 경우는 자진신고서의 소득계산 시 그 이전 2년간의 평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산방식이 규정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음
  
- 거래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그해 가족소득을 합산하여 차감할 수 있음
  - 만약 손실액 전액이 차감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손실이 모두 소멸될 때까지 차감할 수 있음
  
-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인한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16시간/30시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며 그 혜택은 즉시 지원되고, 창업의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음

65) <부록 6> 자영업자 소득신고 신청양식(영국), Tax return: Self-employment(full) sa103f 2010 참조

- 질병으로 인한 지원혜택은 Statutory Sick Pay를 비롯하여 IS, ESA, NIC 등의 지원혜택이 존재함
  - Statutory Sick Pay를 받거나 자영업자이면서 적절한 조건을 가진 경우
  - 저율의 단기 능력상실 지원
  - 업무불가능 시 소득지원(IS: Income Support-IS)
  - 제한된 업무기능에 대한 고용지원수당(ESA: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 업무불가능 및 제한된 업무기능으로 인한 국민보험 지원(NIC: National Insurance credits)
  - 단, IS, ESA, NIC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당 28시간으로 한정하여 지원함
- 자영업자로 창업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소득자들에게 부여되는 구직수당 대신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수당은 거래이익의 일부로 과세대상에 포함됨

〈표 Ⅲ-20〉 소득 변화 시 신고요구

소득변화	신고 시점	신고 이유
£2,500 미만 감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다음해에 과세혜택을 충분히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2,500 이상 감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과세혜택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
£10,000 미만 증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다음해에 너무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가능성 존재(과다지급)
£10,000 이상 증가	즉시	세제혜택이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요구되며 지급감소는 소득변경일로부터 소급 적용됨

자료: www.direct.gov.uk

## 2) 신청자격

- WTC 및 CTC의 대략적인 자격요건은 아이가 없는 경우, 독신이며 아이를 부양하는 경우, 부부가 아이를 부양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만이 WTC의 혜택이 부여됨

- 아이가 없는 경우 WTC의 자격 요건
    - 25세 이상이고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16세 이상이고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일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이고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독신이고 하나 이상의 아이 및 청소년<sup>66)</sup>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
    - 16세 이상이고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일하며 아이 및 청소년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부부이고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격 요건
    - 16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이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일하거나 둘의 근무시간을 합해서 주당 최소 2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16세 이상이고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일하며 장애가 있는 경우
    - 16세 이상이고 주당 최소 16시간 일하며, 배우자가 환자이거나 Carer's Allowance의 수혜자이거나 죄수이거나 특정장애혜택을 받을 때
    - 60세 이상이고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 WTC의 자격은 영국에 거주해야 주어짐
- 자격심사 시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로 인한 연간 소득에 추가하여 사회보장혜택 및 300파운드 이상의 이자·임대 소득이 포함된 총소득(Gross Income)의 형태임
- 근로로 인한 연간 소득(급여소득, 영업소득 등)
  - 특정 주의 혜택(구직수당 등의 기여금)
  - 300파운드 이상의 기타소득(저축이자 및 임대소득 등)
  - 수혜금액은 개인상황, 가족상황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이 수나 근로시간 및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음
- WTC(Working Tax Credit)는 근로를 하고 있는 자가 저소득계층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써 주당 적어도 16시간 일하는 경우에 혜택

---

66) 아이는 16세 이하를 의미하며, 청소년은 19세 이하로 정규교육을 받거나 그와 유사한 승인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이 제공됨

- 근로를 한다는 의미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며, 아이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WTC는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가 있고 부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CTC(Child Tax Credit)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급여혜택의 정도는 독신인지 부부인지, 아이가 있는지, 부양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그 외 수입과 기타비용 등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 WTC 적용 시 근로시간의 의미는 노동에 투입된 시간을 의미하며, 계산 시 평균시간으로 계산하고 직업이 여러 개이면 모두 합산한 시간이며 부부는 둘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함

- 주당 1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WTC 자격은 없으나
  - 소득지원수당이나 구직수당(Income Support or Jobseeker's Allowance)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주거와 관련해서 주거급여혜택(Housing Benefit and Council Tax Benefit)을 받을 수 있음
- 주당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WTC의 자격이 주어지며, 공제액은 소득이 얼마인지와 기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됨
-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CTC 및 CB(Child Benefit)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신생아 지원, 장례비용 지원, 무료처방, 무료학교급식 등의 혜택이 지원됨

□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범주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포함된 시간만을 의미하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근로소득자의 근로시간은 자신의 직업에서 주당 급여를 받을 때 책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근무 시 근로시간에 포함됨
  -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면, 고용주에게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제공받아 제출함
-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사업을 위해 소요된 시간을 의미하며, 다음의 시간이 포함됨
  - 도소매업자의 이동시간, 고객을 방문하기 위한 시간, 광고를 위해 소비한 시간, 사업장을 청소한 시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택시, 영업용 트럭 등)을 청

소한 시간, 장부를 기록한 시간, 영업 관련 연구의 시간

-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방문하기 위한 시간이 포함됨
- 창업하여 정기적인 시간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주당 기대되는 시간을 추정함

### 3) 소득범위

#### 가) 소득

-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소득의 범주는 크게 영업을 통한 판매(매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됨
  - 판매소득은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판매액 또는 매출액을 의미하며,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장비판매소득, 임대소득 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의 은행계정 이자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장비의 판매소득
    - 사업에 요구되는 임대소득
  
- 자영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공식적인 손익계정 제출이 의무화<sup>67)</sup>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진신고를 통한 정확한 기록이 요구되고, 은행 등을 통해 대출이나 모기지론을 받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기관에서 3년간의 공식적인 손익계정을 요구하고 있음
  - 납세신고의 목적상으로 손익계정의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는데, 자영업자는 최소 과거 5년간, 유한회사나 파트너십의 경우는 최소 과거 6년간의 기록이 요구됨
  
-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소득계정에 포함되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취업 소득, 자영업 소득, 사회보장혜택 수입,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 기타소득에는 연금소득, 투자소득, 자산소득(임대소득 등), 학생소득, 외국수입이 포함됨
  -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외화소득인 외국소득의 경우도 모두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67) 유한회사나 유한회사에 소속된 파트너십의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이때 소득은 외화단위가 아닌 파운드 단위로 전환하여 합산되며, 환율은 과세연도 말(매해 3월 말) 시점의 연간 평균 환율을 적용함

- 자영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이윤을 계산하기 위해 기록이 요구되는데,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판매의 모든 기록과 구매 및 비용의 모든 기록이 요구됨
  - 그 외 기타 기록이 요구되는데, 현금출납부를 비롯하여 소액현금지출부, 판매와 구매 원부, 급여기록부 및 발행·취득한 청구서와 영수증 등 다양한 기록이 요구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 Ⅲ-21>를 참조함

<표 Ⅲ-21> 자영업자의 납세신고 시 기록해야 하는 소득관련 목록

구분	내용	세부내역
기록해야 할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록내용</li> <li>- 현금출납부</li> <li>- 송장</li> <li>- 마일리지 기록</li> <li>- 은행계정</li> <li>- 구매영수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소액포함)출납부</li> <li>- 판매·구매 원부</li> <li>- 급여기록부</li> <li>- 발행·취득한 청구서, 영수증</li> <li>- 금전등록기, 전자 판매기록</li> <li>- 부수적인 소득의 상세기록</li> <li>- 회계연도 말 재고량</li> <li>- 은행계정(통장, 수표책, 예금전표 등)</li> <li>- 사업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현금세부내역</li> <li>- 사업자금으로 포함된 개인자금의 세부내역</li> </ul>
기록유지 방법	종이나 컴퓨터로 기록하며, 전자기록이 요구되는 항목 존재	-
기록유지 기간	일반적으로 최소 5년	
기록의 변경	일반적으로 기록변경 불가능	단, 실제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이나 잠정소득의 경우에는 추가정보제출을 통해 변경 가능
기록의 혼합	사업용과 개인용이 혼합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판매)측면: 소득 포함 배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가족소비를 위한 판매</li> <li>: 재화용역공급 후 물물교환 형태로 지급</li> </ul> </li> <li>- 지출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영업의 사용내역분리</li> <li>: 예) 사업장 위에서 생활하는 경우</li> <li>: 예) 자동차를 개인·영업에 동시 사용 시 마일리지로 분배</li> </ul> </li> </ul>
여러 가지 사업 운영	하나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할 때	매출액 기준 73,000파운드 미만이면 요약신고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신고서를 제출해야함

자료: Recode keeping(self-employed), Business Link.gov.uk 참조 재구성

## 나) 비용

- 일반적으로 이윤은 소득에서 공제가능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허용되는 비용은 거래에 전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된 비용을 의미하며 판매비용 및 원재화의 비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비용들이 존재함
  - 판매비용 및 원재화의 비용, 하청계약 비용, 고용 비용(임금, NI 기여금), 관리유지 비용(난방, 연료, 보험 등)이 포함됨
  - 그 외 사업장이나 장비의 수리비용, 일반 행정 비용, 업무용 차량 비용, 업무용 출장 관련 비용, 광고 및 홍보비용, 법률비용(회계 등 전문적 비용 포함), 부실채권이 나 은행 및 기타 대출의 이자 등이 공제 가능함
  
- 자영업자의 비용 중에서 공제 불가능한 항목은 사업장의 매입이나 교체 비용 및 법률적 분쟁이나 조정과정의 비용과 벌과금으로,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그 외 출·퇴근 비용, 고객에 대한 접대비, 클럽, 기부, 정당 지급금 및 일상적 피복료 등은 공제가 불가능함
  - 자동차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등의 자본 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은 공제가능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 자본항목 공제를 통해 가능함
  
- 자영업자의 비용 중 업무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며, 비업무용이나 사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함
  - 업무용과 비업무용(개인용)이 혼용된 경우에는 업무용에 사용된 부분만을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비용으로 산정함
  
- 자영업자의 비용공제 중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4가지로서 자본공제, 차량관련비용, 사업장 관련 비용 및 기타 행정비용임
  - 자본공제항목은 차량·컴퓨터·장비 등의 기계설비류, 가구나 전기시설 및 배관 시설 등의 고정된 설비나 비품, 기타 건축물 등으로 일반적인 비용공제의 단계가 아닌 자본항목에서 공제 가능함

〈표 Ⅲ-22〉 자영업자의 공제 가능·불가능 비용 목록

구분	공제가능 비용	공제불가능 비용
회계 및 법률 비용	회계사, 변호사, 검사관, 건축가의 사례금 및 기타 법률적 수수료	- 큰 장비나 자산을 매입하는 데 드는 법률비용 - 조세분쟁 비용이나 법률조정의 벌과금
광고비용	신문, 웹사이트, 이메일 등의 광고비용	- 고객, 공급자에 대한 접대비 - 행사 시 접대비
은행, 부채, 신용카드 및 기타 금융 비용	- 은행, 추가인출, 신용카드의 수수료 - 이자 및 임대료 - 영업 채무와 은행의 이자 - 대체 금융지급 비용	- 부채, 추가인출, 기타금융조정의 환급비용
차량 등 출장 경비	- 차량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주차비, 차량면허수수료 - 기차, 버스, 항공, 택시요금 - 호텔숙박(식사포함)비, 출장경비	- 비업무용 차량비용 - 벌금 - 자동차 구입비용 - 출퇴근 비용 - 기타 식사비
문구, 통신, 인터넷비용	- 전화, 모바일, 인터넷, 이메일, 팩스 이용료 - 사무용품 및 문구류 - 컴퓨터 소프트웨어	- 비영업용 개인 사용비용 - 새로운 전화기와 팩스 - 컴퓨터 하드웨어 - 기타 장비비용
판매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비용	- 원재료비용 - 상품생산의 직접비용 - 재판매를 위한 재화구매비용	- 개인용도의 재료 및 재화비용 - 장비의 감가상각비용 - 자산매각의 손익과 감가상각은 공제불가능
청산된 부실채권	- 회복될 수 없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하고 매출액에 포함된 금액	-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 - 고정자산과 관련된 채무 - 일반적인 부실채무
기타영업비용	- 거래나 전문적인 잡지나 구독 - 기타 포함되지 않은 잡다한 영업 관련 비용	- 클럽, 기부, 정당 지급금 - 일상적 피복료 - 비영업용 비용
임대료, 지방세, 수도 및 전기요금 및 보험료 등	- 사업장 임대료 - 수도, 전기, 전열요금 - 보험료, 보안조치(사업관련)	- 비사업용 임대비용 - 사업장매입비용
산업건설	산업건설 관련 하청계약비용	비영업용 관련 용역의 지급
임금과 급료 관련 비용	- 임금, 급여, 보너스, 연금, 직원편의 - 대리점 수수료, 하청계약 노동비용, 사용자지급 국민보험료	- 소유주의 임금 및 매상고, 연금지급, 국민보험료
장비·기계에 대한 수리	- 사업장 또는 장비의 유지 및 수리비 - 작은 기계장비의 갱신	- 장비와 사업장 관련 비사업용 비용 - 장비와 사업장의 교체나 개량비용

자료: HM Revenue & Customs, Expenses and Allowances for the Self-employed

- 차량비용은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계산해서 공제되는데,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사업목적의 출장 등을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방식과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기록하여 비례 계산하여 차감하는 방식이 존재함
  - 사업장비용은 사업장과 관련된 임대료, 전열비, 난방비, 수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공제 가능하며, 집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 관련 부분만을 산정하여 공제하고 있음
  - 사업운영과 관련된 행정비용도 공제되는데, 사업과 관련된 문구류, 우편료, 전화, 팩스 등이 존재함
- 세부적으로 이윤을 계산하기 어려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과 공제가 허용되는데, 농민·예술가, 하숙인, 양육보호자 등이 특별규정을 적용받으며, 이윤이 특정한도 이하의 경우 과세감면이 허용되며 이윤의 계산방식도 평균을 사용하는 등의 예외가 허용됨
- 농민과 정원사 및 예술가의 경우는 과세연도 2년의 이윤에 대해 평균이윤을 산정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함
  - 자신의 집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하숙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Rent for Room relief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 양육보호자와 성인보호자 등의 자영업자는 특정금액 이하의 과세되지 않고 특정금액 이상의 경우는 단순한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 산정이 가능함
- 농민과 원예사 및 예술가의 경우는 과세연도 2년의 이윤에 대해 평균이윤을 산정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할 수 있음
- 농민과 원예사의 경우는 연간이윤이 3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 급격한 소득변동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년의 평균이윤을 산출하여 과세소득으로 결정함
  - 작가, 뮤지컬, 드라마, 디자인 및 예술창작 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들 소득의 연간 변동폭이 매우 크게 발생하여, 징수의 안정성 등을 위해 2001년 3월 예산안에서 평균소득산정방식을 도입함

- 자신의 집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하숙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Rent for Room relief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소득 4,250파운드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 Rent for Room relief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4,250파운드까지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이 감면을 받으면 어떤 비용<sup>68)</sup>도 공제될 수 없고, 이 감면을 받지 않으면 일반적인 자영업자 공제방식을 신청할 수 있음
  - 영국 내에 자신의 집을 세놓고 해외에 잠시 체류하는 경우에는 Rent for Room relief에 해당되지 않음
  
- 자영업자의 소득 중에서 양육보호자와 관련된 이윤은 과세소득에서 면제되는데, 회계연도 2003-04부터 소득세법에 의해 실행되고 있음
  - 양육보호에 대한 이윤은 연간 1만파운드나 주당 200~250파운드를 한도로 하여 과세소득에서 면제함
    - 연간 1만파운드 한도 내
    - 11세 미만의 아이는 주당 200파운드까지, 11세 이상의 아이에 대해서는 주당 250파운드까지 면제
  - 양육보호에서 총수입이 위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소득세 규정을 적용받는 방법이나,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비용 및 자본공제에서 제외되는 단순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4) 소득산정

- 자영업자가 WT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해 과세연도(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까지)에 대한 소득의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WTC의 산정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가능소득임
  
- 자영업자의 과세목적상 과세가능소득의 계산 과정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세소득으로 산정됨

---

68) 식대, 세탁, 청소 등 하숙을 위한 비용

- 1단계: 이윤 계산
- 2단계: 공제 항목
- 3단계: 최종 과세소득

#### 가) 1단계: 이윤 계산

- 가장 먼저 과세연도 이윤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지난해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작성하고,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추가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지난해의 소득을 추정하여 이윤을 계산해야 하며 이때 이윤은 과세연도에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서 해당 영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전체를 차감해서 계산함
  - 해외로부터 얻은 모든 소득이 포함되며 영국 파운드가 아닌 외화로 입력해야 하고 외화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평균 환율을 사용함
    - 즉, 소득이 2010년 4월 6일~2011년 4월 5일에 발생한 것이라면 2011년 3월 31일 기준의 연평균환율을 사용함
  - 영업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및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은 이윤에 포함됨
  - 단, 농부나 정원사 등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평균수익을 사용하며, 지난 2년간의 소득을 계산하여 평균해서 소득을 산정함

#### 나) 2단계: 공제되는 항목

-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영업으로 인한 거래손실, 연금기여금, 기부금 등으로 HMRC에 적격하게 등록되어 있는 항목임
  - HMRC에 등록된 연금제도에 납입한 연금총액
  - 동일한 사업에 대한 거래손실액
  - 기프트에이드(Gift Aid)에 기부한 기부금 총액

다) 3단계: 최종 과세소득

- 자영업자의 소득은 1단계와 2단계의 조정을 거쳐서 3단계에서 과세가능 소득이 계산되며, 세금신고서 양식이나 연간과세신고서 등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sup>69)</sup>됨
  - 당해연도에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했다면 소득란에 0을 표기함
  - 부부합산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부부의 다른 소득에서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도 손실이 남아 있다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올해 최초로 자영업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난 과세연도에 소득을 책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소득을 모르는 경우에는 대략계산으로 추정하여 기입함
  - 정확한 소득을 모르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이 필요한데, 모두 일년 단위로 맞추어서 계산하여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함
    - 매주 정산하는 경우는 주당 소득에 52배
    - 매달 정산하는 경우는 매달 소득에 12배
    - 4주 단위로 계산할 때는 그 소득에 13배
    - 이렇게 대략 계산한 추정치가 너무 낮으면 Tax Credit Office에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올해 소득의 변화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Tax Credit Office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절차를 통해 소득조정이 이루어지면 급격한 공제액의 변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능함

5) 신청 및 지급

-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근로유인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략계산으로 먼저 확인함

69) <부록 5> 영국의 자영업자 소득산정 방식(예시) 참조

- 소득은 근로를 통한 연간 소득과 구직수당 등의 기여금으로 받은 특정 주의 혜택 및 300파운드 이상의 저축이자 등의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함
  - 독신은 국민보험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부부의 경우는 두 명 모두의 국민보험번호가 필요함
  -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의 재정상황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증빙서 내역 및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 양식을 제출해야 함
- 자격이 부여되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계정 등의 금융기관 계정으로 주당 또는 4주당 단위로 지급됨
    - 아이가 있는 경우는 주된 양육자를 지정하여 그 사람의 계정으로 지급함
  - WTC의 재신청 만료일은 매해 7월 31일이며, 신규신청의 경우도 그해 과세연도가 끝나는 시점인 4월 6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함
    - 즉, 2012년 11월 10일에 신규 신청한 경우라도 지급시점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작함
  - 개인적인 상황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WTC 금액과 직접 연결되므로 가능한 빨리 국세청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콜센터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함
    - 변경의 조건은 창업을 했을 경우나, 이혼했을 경우, 임신했을 경우 등이 해당됨

#### 라. 관련 통계

- WTC와 CTC 수혜 가구의 분포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살펴보면, WTC와 CTC를 동시에 수혜한 가구와 자녀 없이 WTC만 수혜한 가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근로장려세제의 근본취지와 부합되는 결과라고 판단됨
  - 그러나 일하지 않고 아이만 있는 가구의 경우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수혜가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23〉 WTC와 CTC 관련 가구수(2003년~2012년)

(단위: 천명)

	일하지 않는 가구	일하는 가구					총계
		WTC & CTC	아이: ○		아이: × WTC만 수령	소계	
			가구요건 초과	가구요건 이하			
2003.07.11	1,400	1,465	647	1,851	121	4,084	5,500
2003.10.03	1,400	1,481	663	1,934	200	4,278	5,700
2004.01.05	1,400	1,548	687	1,973	215	4,423	5,900
2004.04.05	1,400	1,589	704	2,013	235	4,541	6,000
2004.12.03	1,400	1,492	694	2,075	258	4,519	5,900
2005.04.05	1,400	1,531	711	2,115	282	4,639	6,000
2005.12.05	1,300	1,497	697	2,024	320	4,538	5,900
2006.04.03	1,400	1,565	684	2,033	319	4,601	6,000
2006.12.02	1,400	1,596	657	1,951	323	4,526	5,900
2007.04.03	1,398	1,645	665	1,966	343	4,619	6,017
2007.12.04	1,345	1,650	658	1,882	352	4,541	5,886
2008.04.05	1,383	1,715	671	1,898	376	4,660	6,043
2008.12.04	1,389	1,763	679	1,763	426	4,630	6,019
2009.04.01	1,418	1,804	688	1,766	455	4,714	6,131
2009.12.01	1,463	1,870	703	1,627	511	4,712	6,174
2010.04.01	1,492	1,910	718	1,635	548	4,811	6,304
2010.12.01	1,441	1,975	723	1,579	561	4,838	6,279
2011.04.03	1,470	2,002	737	1,581	591	4,911	6,381
2011.12.01	1,435	1,922	774	1,000	566	4,262	5,697
2012.04.01	1,474	1,934	793	984	582	4,294	5,768

자료: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2012.04, HM Revenue & Customs

- 2012년 4월 기준으로 WTC와 CTC의 수혜가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수혜가구는 577만가구이며, 순수하게 근로와만 연계되어 지급되는 WTC의 경우 약 10%가 수혜한 것으로 나타남
  - WTC & CTC를 동시에 수혜한 가구가 약 200만가구로 아이 없이 WTC만 수혜한

가구 약 60만에 비해 3.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4〉 수혜 가구별 분류(독신, 부부 및 아이)(2012년 4월 기준)

(단위: 천명)

구 분			가구수			아이수	
			독신	부부	소계		
일하지 않는 가구	(아이:○)	○ CTC	1,046.3	354.0	1,400.3	2,642.3	
		- 최대수혜가구	1,034.2	319.9	1,354.0	2,565.8	
		- 감소율적용가구	12.1	34.1	46.2	76.5	
		○ 기타가족혜택	47.4	26.6	74.0	162.3	
		소계	1,093.7	380.6	1,474.3	2,804.6	
일하는 가구	① 아이: ○	○ WTC & CTC 모두					
		- 최대수혜가구	436.9	252.8	689.7	1,293.2	
		- 감소율적용가구	576.9	667.7	1,244.6	2,163.2	
		소계	1,013.8	920.5	1,934.3	3,456.4	
	○ CTC만	- 가구요건 초과	127.5	665.9	793.4	1,625.8	
		- 가구요건	86.0	868.6	954.6	1,331.9	
		- 가구요건 미만	1.4	28.2	29.6	51.5	
		소계	214.8	1,562.8	1,777.6	3,009.2	
		① 아이: ○ 소계	1,228.6	2,483.3	3,711.9	6,465.6	
		② 아이: ×	○ WTC만				
			- 최대수혜가구	167.9	31.1	199.0	-
	- 감소율적용가구		252.4	130.3	382.7	-	
	② 아이: × 소계		420.3	161.4	581.7	-	
	일하는 가구 총계			1,648.9	2,644.7	4,293.5	6,465.6
	아이가 있는 가구			2,322.3	2,863.9	5,186.2	9,270.2
기타가구			420.3	161.4	581.7	-	
전체 수혜가구 총계			2,742.6	3,025.3	5,767.8	9,270.2	

자료: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2012.04, HM Revenue & Customs

## 4. 뉴질랜드

### 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와 IWTC

-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연금과 급여를 제공하며, 사회복지가 매우 발달한 나라로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보조를 위해 제공되고 있음
  -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세금을 조달하여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공공부조의 형태를 지니며, 크게 ① 가족지원제도, ② 노인·질병·장애인지원제도, ③ 교육 및 고용 지원제도, ④ 기타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표적인 가족지원제도는 WfFTC<sup>70)</sup>로서 FTC, CTC, IWTC, PTC, MFTC 등의 현금급여지원을 하는 제도와 WfFTC에 포함되지 않는 양육보조(Child Care Subsidy)와 아동보조(OSCAR Subsidy<sup>71)</sup>)가 존재함
  - WfFTC 제도 중에서 최소 근로시간요건을 두고 있는 제도는 IWTC와 MFTC로서 MFTC는 저소득가구의 지원제도인 반면, IWTC는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일정소득이 초과함에 따라 급여율이 점감하는 근로장려세제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양육보조제도는 맞벌이 저소득 가구가 보육기관에 주당 6시간 이상 맡긴 경우에 소득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아동보호제도는 5세에서 13세 사이 아동보호를 위해 주당 20시간(방학 중 30시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부모가 맞벌이거나 야간근무 및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됨
  
- 노인·질병·장애인지원제도는 노후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중증환자 급여(Invalid's Benefit), 질병급여(Sickness Benefit),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

70) WfFTC(Working for Family Tax Credit)는 가족지원제도로써 FTC(Family Tax Credit), CTC(Child Tax Credit), IWTC(In-Work Tax Credit), PTC(Parental Tax Credit), MFTC(Minimum Family Tax Credit)으로 구분되며 이후 절에서 자세히 살펴봄

71) OSCAR(Out of School Care and Recreation) Subsidy

응급급여(Emergency Benefit), 군인연금(Veteran's Pension), 양로보조금(Rest Home Subsidy) 등이 존재함

-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노후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그 중 5년은 50세 이후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 수령 가능함

□ 교육 및 고용지원제도에도 다양한 보장내역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항목은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학생급여(Student Allowance)가 해당됨

-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는 계속 직업을 찾고 있으나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18세 이상으로 노후연금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됨
  - 단, 16세~17세의 경우에도 결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혜 가능함
- 학생급여(Student Allowance)는 정부가 인정한 학교에 다니는 정규학생의 생활비 보조금으로서 만 18세 이상이고, 정규교육을 받으며,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함
- 그 이외에도 청소년급여(Independent Youth Benefit), 교육훈련보조(Training Incentive Allowance), 교육훈련급여(Training Benefit), 구직보조(Job Search Allowance) 등의 보장내역이 존재함

□ 그 외 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보장내역으로는 고아수당(Orphans Benefit), 장례보조(Funeral Grants), 미망인급여(Widows Benefit), 주거보조(Accommodation Supplement), 주거급여(Accommodation Benefit), 특별급여(Special Benefit)가 존재함

- 주거보조는 16세 이상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경우 소득기준에 의거하여 임대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하숙비, 기숙사비, 또는 임대주택의 용자가 많은 경우 소득기준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임
- 그 외 특별급여는 현재의 소득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많은 지출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급여로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상세한 재정 상황 자료를 제시해야 수령이 가능함

## 나. IWTC 제도

### 1) 도입배경

- 뉴질랜드의 가족지원제도는 호주의 가족지원제도와 매우 유사하나, 호주의 경우는 노동력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기준과 아이 수에 의해 지원되는 반면, 뉴질랜드는 가족제도 안에 노동연계 제도인 IWTC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유사한 제도로서 미국의 EITC 제도와 영국의 WTC 제도가 있으나, 미국의 EITC가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의 IWTC는 근로시간요건만 충족되면 자녀에 따라 소득한도까지는 점감구간을 가지지 않고 지급되고 있음
  
- 뉴질랜드의 IWTC는 당초 영국의 WTC를 모델로 하여 2006년 4월 1일에 도입되어 평탄, 점감구간을 가지는 것은 유사하나 지급대상 및 점감률 등 내부적인 구성요소는 다소간의 차이를 지님
  - 영국의 WTC(미국의 EITC)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Worker에게 지급되는 반면 뉴질랜드의 IWTC는 자녀를 기준으로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특징을 가짐
  - 또한 영국의 WTC(미국의 EITC)는 점감률이 빠른 반면 IWTC는 점감률이 느린 것도 제도의 특징임

### 2) 급여체계

- 뉴질랜드의 IWTC는 가족지원제도인 WfFTC(Working for Family Tax Credit)의 한 구성요소로서 가족지원제도는 FTC(Family Tax Credit), CTC(Child Tax Credit), IWTC(In-Work Tax Credit), PTC(Parental Tax Credit), MFTC(Minimum Family Tax Credit)의 5개로 범주로 구분되어 있음
  - FTC<sup>72)</sup>는 아이를 가진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로서 아이의 수와 나이 및 출생

---

72) 이전 명칭은 Family Support임

순위에 따라 급여액의 차등을 두고 있음

- CTC는 기타 복지혜택<sup>73)</sup>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가진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아 이당 15뉴질랜드달러(주당)를 지급함
  - 이 제도는 2006년 4월부터 IWTC로 대체되었으나, IWTC의 자격을 갖지 못한 가구의 경우는 여전히 CTC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IWTC는 3명의 아이까지 주당 60뉴질랜드달러의 급여가 지급되며, 3명을 초과하 는 아이에 대해서 주당 15뉴질랜드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근로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되는데, 부부의 경우는 주당 30시간을 초 과해야 하며, 한부모의 경우에는 주당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격요건이 부여됨
- PTC는 자녀의 출생 이후 8주간 주당 150뉴질랜드달러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서 CTC나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지급받을 수는 없음
  - 이 급여는 가족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연간 신생아 1명당 최고 1,200뉴질랜드달러까지 지급이 가능함
  - 수령방법은 8주 동안 매주 또는 매2주마다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함
  - 세전 가족소득이 연 6만 8천뉴질랜드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최고 1,200뉴질랜드달러가 지급됨
- MFTC는 IWTC와 동일한 근로시간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연간 세후 소득이 2만 2,568뉴질랜드달러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자영업자는 제외됨

---

73) Welfare Benefit, New Zealand Superannuation or Earnings-related ACC

〈표 Ⅲ-25〉 WIFTC의 급여형태 및 내용

급여형태	내용
FTC	18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지급
IWTC	주당 요구되는 근로시간을 충족한 근로가구로서 18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지급 - 부부의 경우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의 경우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
MFTC	연간 소득이 2만 2,568뉴질랜드달러 이하인 가구에 대해 18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 - 부부의 경우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의 경우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
PTC	아이의 출산 후 최초 56일(8주)간 지급 - 단, 소득기준의 급여혜택을 받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됨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 뉴질랜드의 가족지원제도는 실제의 순소득에 가장 우선적으로 MFTC를 지급하는데, 연간 2만 2,568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주당 최고 434뉴질랜드달러의 기본적인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상위에 추가적으로 FTC와 IWTC 그리고 PTC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FTC는 연간 3만 6,350뉴질랜드달러 이하의 가구에 주당 최고 92뉴질랜드달러(자녀 1인당)를 지급하고 IWTC는 주당 3명까지는 69뉴질랜드달러를 지급하며 PTC는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8주간 주당 150뉴질랜드달러를 지급하게 됨

〈표 Ⅲ-26〉 가족지원제도의 체계

PTC(Parental Tax Credit)
IWTC(In-Work Tax Credit)
FTC(Family Tax Credit)
MFTC(Minimum Family Tax Credit)
Net Earned Income

자료: RPRC(The Retirement Policy and Research Centre), An evaluation of 'In Work Benefits' in New Zealand: Use of the In Work Tax Credit to encourage labour supply: implications for an ageing population, 2008

## 3) 급여액의 산정

- IWTC의 급여액은 평탄·점감구조를 가지는 형태로서 아이가 한 명인 경우에는 연간 5만 9천뉴질랜드달러(세전)까지는 동일하게 주당 60뉴질랜드달러를 지급하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됨
- 또한 IWTC는 최소 근로시간조건이 충족되면 소득과 아이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아이 3명까지는 60뉴질랜드달러로 동일하게 지급하다가 4명부터 1명 추가당 15뉴질랜드달러씩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FTC의 급여액은 주당 소득이 699뉴질랜드달러 이하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주당 FTC 92뉴질랜드달러의 최고액을 수령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감되는 구조를 가짐

〈표 Ⅲ-27〉 소득수준에 따른 FTC와 IWTC의 주당 급여액(2012.4.1~2013.3.31)

(단위: 뉴질랜드달러)

가구소득(세전)		아이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주당	연간	FTC	IWTC										
to 699	to 36,350	92	60	157	60	221	60	286	75	350	90	414	105
708 to 731	36,351 to 38,000	85	60	150	60	214	60	279	75	343	90	408	105
732 to 760	38,001 to 39,500	79	60	144	60	208	60	273	75	337	90	402	105
761 to 788	39,501 to 41,000	73	60	138	60	202	60	267	75	331	90	395	105
809 to 817	41,001 to 42,500	67	60	132	60	196	60	260	75	325	90	389	105
818 to 846	42,501 to 44,000	61	60	125	60	190	60	254	75	319	90	383	105
847 to 875	44,001 to 45,500	55	60	119	60	184	60	248	75	313	90	377	105
876 to 904	45,501 to 47,000	49	60	113	60	178	60	242	75	306	90	371	105
905 to 933	47,001 to 48,500	43	60	107	60	171	60	236	75	300	90	365	105
934 to 962	48,501 to 50,000	36	60	101	60	165	60	230	75	294	90	359	105
963 to 990	50,001 to 51,500	30	60	95	60	159	60	224	75	288	90	353	105
991 to 1,019	51,501 to 53,000	24	60	89	60	153	60	218	75	282	90	346	105
1,020 to 1,048	53,001 to 54,500	18	60	83	60	147	60	211	75	276	90	340	105
1,049 to 1,077	54,501 to 56,000	12	60	76	60	141	60	205	75	270	90	334	105
1,078 to 1,106	56,001 to 57,500	6	60	70	60	135	60	199	75	264	90	328	105
1,107 to 1,135	57,501 to 59,000		60	64	60	129	60	193	75	257	90	322	105
1,136 to 1,163	59,001 to 60,500		54	58	60	122	60	187	75	251	90	316	105
1,164 to 1,192	60,501 to 62,000		47	52	60	116	60	181	75	245	90	310	105

〈표 Ⅲ-27〉의 계속

가구소득(세전)		아이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주당	연간	FTC	IWTC										
1,193 to 1,221	62,001 to 63,500		41	46	60	110	60	175	75	239	90	303	105
1,222 to 1,250	63,501 to 65,000		35	40	60	104	60	168	75	233	90	297	105
1,251 to 1,279	65,001 to 66,500		29	33	60	98	60	162	75	227	90	291	105
1,280 to 1,308	66,501 to 68,000		23	27	60	92	60	156	75	221	90	285	105
1,309 to 1,337	68,001 to 69,500		17	21	60	86	60	150	75	215	90	279	105
1,338 to 1,365	69,501 to 71,000		11	15	60	80	60	144	75	208	90	273	105
1,366 to 1,394	71,001 to 72,500		5	9	60	73	60	138	75	202	90	267	105
1,395 to 1,423	72,501 to 74,000			3	60	67	60	132	75	196	90	261	105
1,424 to 1,452	74,001 to 75,500				57	61	60	126	75	190	90	254	105
1,453 to 1,481	75,501 to 77,000				51	55	60	119	75	184	90	248	105
1,482 to 1,510	77,001 to 78,500				44	49	60	113	75	178	90	242	105
1,511 to 1,538	78,501 to 80,000				38	43	60	107	75	172	90	236	105
1,539 to 1,567	80,001 to 81,500				32	37	60	101	75	165	90	230	105
1,568 to 1,596	81,501 to 83,000				26	30	60	95	75	159	90	224	105
1,597 to 1,625	83,001 to 84,500				20	24	60	89	75	153	90	218	105
1,626 to 1,654	84,501 to 86,000				14	18	60	83	75	147	90	212	105
1,655 to 1,683	86,001 to 87,500				8	12	60	77	75	141	90	205	105
1,684 to 1,712	87,501 to 89,000				2	6	60	70	75	135	90	199	105
1,713 to 1,740	89,001 to 90,500						60	64	75	129	90	193	105
1,741 to 1,769	90,501 to 92,000						54	58	75	123	90	187	105
1,770 to 1,798	92,001 to 93,500						48	52	75	116	90	181	105
1,799 to 1,827	93,501 to 95,000						41	46	75	110	90	175	105
1,828 to 1,856	95,001 to 96,500						35	40	75	104	90	169	105
1,857 to 1,885	96,501 to 98,000						29	34	75	98	90	163	105
1,886 to 1,913	98,001 to 99,500						23	27	75	92	90	156	105
1,914 to 1,942	99,501 to 101,000						17	21	75	86	90	150	105
1,943 to 1,971	101,001 to 102,500						11	15	75	80	90	144	105
1,972 to 2,000	102,501 to 104,000						5	9	75	74	90	138	105
2,001 to 2,029	104,001 to 105,500							3	75	67	90	132	105
2,030 to 2,058	105,501 to 107,000							1	71	61	90	126	105
2,059 to 2,087	107,001 to 108,500								66	55	90	120	105
2,088 to 2,115	108,501 to 110,000								60	49	90	113	105
2,116 to 2,144	110,001 to 111,500								53	43	90	107	105
2,145 to 2,173	111,501 to 113,000								47	37	90	101	105
2,174 to 2,202	113,001 to 114,500								41	31	90	95	105
2,203 to 2,231	114,501 to 116,000								35	25	90	89	105
2,232 to 2,260	116,001 to 117,500								29	18	90	83	105
2,261 to 2,288	117,501 to 119,000								23	12	90	77	105
2,289 to 2,317	119,001 to 120,500								17	6	90	71	105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2013\_ir271.pdf

〈표 Ⅲ-28〉 MFTC의 소득구간에 따른 지급액

(단위: 뉴질랜드달러)

가구소득(세전)		
주당	연간	MFTC
to 269	0 to 14,000	434-193
270 to 298	14,001 to 15,500	193-169
300 to 326	15,501 to 17,000	169-145
327 to 355	17,001 to 18,500	145-121
356 to 384	18,501 to 20,000	121-97
385 to 413	20,001 to 21,500	97-74
414 to 442	21,501 to 23,000	74-50
443 to 471	23,001 to 24,500	50-26
472 to 503	24,501 to 26,167	26-0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2013\_ir271.pdf

## 다. 자영업자에 대한 IWTC 적용기준

### 1) 개요

- IWTC는 근로유인을 위해 주당 최소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지급되는 급여로서 부부의 경우 최소 주당 30시간, 한부모의 경우 최소 주당 20시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상기 근로시간조건은 근로계약 상태에서 일시적 휴가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해당 주에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혜택은 유지됨
  - 그 외 직장을 이동하는 동안의 일시적 실업기간이나 근로계약을 종료한 상태의 휴가기간 등은 일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간에는 IWTC를 지급하지 않음
- IWTC에 적합한 소득종류는 3가지로서 급여소득, 주주-직원 급여, 사업수행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나뉘짐

- 그 외 소득기준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거나, 학생수당을 지급받거나, 부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IWTC의 지급이 제한됨

2) 신청자격

- 뉴질랜드의 가족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요건, 아동보호자 요건, 나이요건,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양자녀요건은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제공되며 아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지급함

〈표 Ⅲ-29〉 WfFTC의 신청요건 및 내용

자격기준	내용
부양자녀요건	- WfFTC는 다음의 부양자녀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하의 부양자녀</li> <li>• 아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이는 다음의 경우가 제외됨)</li> </ul> ; 아이가 30시간 이상 일하거나 ; 학생수당을 지급받거나 기타 정부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 18세 이하의 아이는 적절한 학교 및 기관에 다녀야 하며, 18세가 된 부양자녀의 경우는 당해 연말까지 급여가 제공됨 - WfFTC를 신청한 모든 아이는 IRD number를 가져야 함
아동보호자요건	아동보호자는 적절한 부모이거나 매일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개인으로 아이를 파트타임으로 양육하는 보육사 등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나이요건	부모의 나이요건은 16세 이상임
거주요건	- 거주요건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에 현재 거주하면서 최소 이전 12개월 동안 거주한 경우로서 세법상 거주자이며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함</li> <li>• 급여를 신청하는 아이의 경우도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함</li> </ul> - 아이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면 거주자로 간주하며, 아이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아래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자격요건이 주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li> <li>• 뉴질랜드, 호주, Cook Islands, Tokelau, Niue의 영주권자</li> </ul> - 보호자 및 부양아동이 뉴질랜드의 불법체류자이거나 임시비자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WfFTC를 받을 수 없음

주: IWTC는 WfFTC 제도의 한 항목이므로 같은 신청자격기준이 적용됨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 아동보호자 요건은 적절한 부모나 아동보호의 책임을 가진 자에게 주어짐
- 보호자의 나이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함
- 거주요건은 보호자와 자녀 모두 뉴질랜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시체류나 불법체류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음

### 3) 소득범위

- IWTC의 자격요건은 부양아동의 수, 연간 가구 합산소득, 일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주당 근로시간이 요구되고 소득의 형태에 따른 가구합산소득을 제시해야 함
-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임금소득자와 같이 부부의 합산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IWTC의 자격요건을 검토하는데,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소득의 형태는 첫째 임금소득, 둘째 자영업소득, 셋째 기타 소득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됨
  - 임금소득은 임금소득자의 임금이나 급여를 의미함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파트너십, 부동산이나 신탁·임대소득, 해외소득이 포함됨
  - 그 외 기타소득으로는 부가급여, 비거주 배우자의 해외소득, 아이의 이자·배당·임대소득,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특정한 국제기구에 근무하면서 세금이 면제된 임금·급여 및 기타수령액 등이 포함됨

### 4) 소득산정

- 자영업자의 소득인 경우에는 임금소득자와 달리 여러 가지 소득 및 손실이 고려되는데, 근로시간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고려되는 각종 소득과 손실 및 정부에서 지원되는 연금 및 공적급여도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기준을 산정함
  - 고려되는 소득과 손실에는 신탁소득, 주주·직원 소득, 영업이나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 및 손실, 기타 적절한 법인에서 발생한 손실 등이 고려됨
  - 자영업자의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공적급여에는 노령연금, 군인연금, 출산수당, 육

아휴직급여, 2006년 이후의 재해보험수당, 요양보호수당, 고아수당 등의 각종수당이 있음

- 자영업자의 IWTC 신청을 위한 소득산정 과정은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 구분 없이 개인의 소득신고서인 IR3에 의거하며, 영업을 통한 총소득에서 영업으로 발생한 총비용을 공제하여 연간 순소득을 계산하고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이 금액이 한도액 이하라면 자격요건이 부여됨
  - 총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소득으로는 임금소득, 영업소득, 파트너십, 부동산이나 신탁·임대소득, 해외소득이 포함되며, 기타소득으로 부가급여, 비거주 배우자의 해외소득, 아이의 이자·배당·임대소득,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특정한 국제기구<sup>74)</sup>에 근무하면서 세금이 면제된 임금·급료 및 기타수령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함
  - 총비용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소득산출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서 작성 시 수수료, 소득산출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차입금의 이자, 보험료, 과세지연 이자 등이 포함됨
  - 그 외 뉴질랜드는 집에서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서비스<sup>75)</sup>의 면허를 발급하여 영업 활동으로 인정하는데, 개인이 아동을 보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표준비용이나 실제비용 중에서 택해서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GST에 등록된 아동보육사의 경우는 표준비용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지원급여의 소득산정 시 기타소득에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 자녀의 이자·배당·임대소득, 그 외 기타수령액이 새롭게 포함됨
  - 해외에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으로 분류되어 가족수당 정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가구합산소득에 포함함

74) 특정한 국제기구란 대표적으로 UN이나 OECD 등에 근무하면서 과세 면제된 경우를 의미함

75) Licensing Criteria for Home-Base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2008

- 18세 이하의 자녀가 이자·배당·임대소득·신탁·수동적 소득이 있고, 이 금액이 500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가구의 합산소득에 포함함
- 그 외 가족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개인(가족포함)이나 특정단체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5천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지원액을 가구의 합산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함

5) 신청 및 지급

- IWTC를 신청하려는 자는 아이의 IRD 번호가 있어야 하며, 뉴질랜드의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및 현년도의 소득신고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표 Ⅲ-30〉 IWTC의 신청방법 및 내용

상황	필요내역
아이의 IRD 번호가 없는 경우	가족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아이에 대한 IRD 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요구된다면, IRD 번호 없이 출생과 더불어 8주간은 급여가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도 IRD 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급여가 중지됨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	IWTC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가 해당자격을 가짐 -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의 거주허가 또는 재입국비자가 있어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추정된 소득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 전년도의 연간 사업 계정(소득지출내역서) - 현년도의 연간 사업·예산 계정 - 전년도의 소득신고제출 신청서
아이가 6명 이상인 경우	아이가 6명 이상인 경우, More than six children(IR835) form을 작성하여야 함
아이를 공동양육하는 경우	아이를 공동양육하는 경우 Shared care details(IR836) form을 작성하여야 함
전년도에 신청한 경우	IWTC를 이전연도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자는 Family details(IR837) form을 작성하여야 함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 그 외 자녀가 6명 이상이거나 아이를 공동 양육하는 경우 및 전년도에 IWTC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6) IETC(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제도<sup>76)</sup>

- IETC는 가족지원제도, 노령연금 및 기타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소득이 2만 4천~4만 8천뉴질랜드달러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도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한 경우에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된 모든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짐
  - IETC에 적격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연중에 추가급여 인상이나 보너스의 증가 및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총소득이 증가된 경우는 과세연도 말에 일부를 환납할 수도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 총소득이 4만 8천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납하여야 함

〈표 Ⅲ-31〉 IETC의 신청자격 요건

소득 구간	적격요건
과세연도의 연간소득이 \$24,000 ~\$48,000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 거주자</li> <li>• 파트너가 WfETC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 소득기반의 급여혜택<sup>1)</sup>을 받지 못하는 경우</li> <li>• 군인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li> <li>•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li> </ul>

주: 1) domestic purposes, emergency, independent youth, invalids', sickness, unemployment, widows',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76) 뉴질랜드의 IWTC 제도는 근로유인제도이기는 하지만 가족제도의 일환이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IETC는 자녀가 없이 근로하지만 저소득계층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2009년에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자영업자가 IETC를 신청하는 경우 회계연도 말인 매해 3월 31일까지 확정된 소득신고서인 IR3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적격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모든 월의 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표 Ⅲ-32〉 IR3의 발행과 제출 및 처리과정

날짜	내용
4월~5월	IR3 세금신고서를 발행
5월	과세관청의 IR3 소득신고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세한 소득내역을 기록하여 신청함
7월 7일	IR3 소득신고서 만료(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한)
IR3 제출 후 과정	승인, 환급, 세금 청구서 등이 처리되어 발송됨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 과세관청은 확정된 소득신고서인 IR3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주 이내에 승인 여부와 급여지급 여부를 통지함
- IR3의 세부내역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평가서를 통지함
- IETC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내역이 과세액보다 많다면 환급하고, 공제내역이 과세액보다 적다면 과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됨

〈표 Ⅲ-33〉 IETC 공제내역

소득구간	공제내역	내용
모든 기간에 적격한 소득인 경우	\$520	
소득이 \$44,000 ~ \$48,000 사이인 경우	\$520 미만	소득 1달러당 13cent씩 감소됨
전체기간에는 적격하지 않은 경우	\$520 미만	적격한 해당연도의 개월수 만큼 할당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라. 관련 통계

- WfFTC의 지급액은 2009-10 과세연도 기준 2,787백만뉴질랜드달러로서 2008-2009 과세연도보다 114백만뉴질랜드달러가 증가하여 4.3%의 증가율을 보임
  -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수는 2009~2010년에 다소 증가하여 약 20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연간 급여지급에 따른 채무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증가규모는 주간/격주간의 분할 지급 시 과소지급 및 과다지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임

〈표 III-34〉 WfFTC의 수급자수 및 채무금액 추이

(단위: 명, 뉴질랜드달러, 백만뉴질랜드달러, %)

	2006.6	2007.6	2008.6	2009.6	2010.6
정기적인 수급자수	159,000	190,000	198,000	203,000	201,000
평균주당 급여액(NZD)	138	153	150	156	153
총채무금액(백만NZD)	152	158	169	200	238
채무 증가율	-11.6	3.9	6.9	18.3	19.0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 WfFTC의 내역별 평균수급액을 살펴보면 IWTC가 도입되어 시행된 2007년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WfFTC 중에서 FTC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IWTC도 도입된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WfFTC 중에서 FTC의 평균급여액이 전체 평균 급여액의 약 83% 수준이며, IWTC의 경우는 평균급여액이 총급여액의 약 39%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Ⅲ-35〉 WfFTC의 가구당 평균수금액 추이(2001년~2010년)

(단위: 뉴질랜드달러)

	FTC	CTC	MFTC	PTC	IWTC	Total
2001년	3,075	1,295	2,459	990		3,456
2002년	3,081	1,226	2,367	962		3,424
2003년	3,107	1,245	2,304	966		3,457
2004년	3,135	1,235	2,933	986		3,506
2005년	3,162	1,219	2,400	959		3,473
2006년	4,575	1,227	1,800	978		4,928
2007년	4,661	1,171	2,900	1,096	2,557	5,798
2008년	5,337	1,302	2,600	1,091	2,561	6,515
2009년	5,422	1,259	2,826	1,050	2,561	6,607
2010년	5,521	1,245	2,926	1,012	2,558	6,634

자료: <http://www.ird.govt.nz/>, Inland Revenue

## IV. 근로장려세제의 국제비교

### 1.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1975년부터 도입하여 가장 오랫동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영국은 1999년 WFTC로 근로유인정책을 시행하다가 2003년부터 현재의 WTC로 정착되었으며,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각각 2006년, 2007년에 근로유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1975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주요 복지정책의 하나로 정착하였음
  -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도입되어 그 역사도 길지 않고 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도 미미한 수준임
  - 영국은 1999년 WFTC 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이미 근로장려세제 형태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 현재의 형태인 WTC와 CTC 제도로 정착됨
  - 뉴질랜드의 IWTC 제도는 2006년 영국의 WTC를 모델로 하여 제도가 도입되어 영국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나 점감률 및 급여대상자 등 세부적 차이를 지님
  
-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근로장려세제의 운영을 국세청이 관장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1년 단위로 지급하지만,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는 주단위, 격주단위, 월단위로 분할지급도 가능하며 캐나다는 분기로 지급하고 있음
  - 적용단위는 대부분의 나라가 가구단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수나 소득수준에 따라 그 급여수준을 달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가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이를 자녀와 연계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 빈곤층의 확산을 방지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급여수준 및 최대 소득수준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양극화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IV-1〉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개요

구 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도입연도	2008년	1975년	2007년	2003년	2006년
명 칭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WITB (Working Income Tax Benefit)	WTC <sup>1)</sup> (Working Tax Credit)	IWTC <sup>2)</sup> (In-Work Tax Credit)
운영주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적용단위 (지급주기)	가구 (1년: 일시금)	가구 (1년: 일시금)	가구 (분기)	가구 - (월/주: 분할) - (1년: 일시금)	가구 - (주·격주: 분할) - (1년: 일시금)

주: 1) 1999년 WFTC로 이미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었으나 2003년에 WTC & CTC의 형태로 전환되었고, WTC의 도입연도가 2003년임을 의미함

2) IWTC는 WFTC인 가족지원제도의 한 구성요소로서 FTC, PTC, MFTC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되고 있음

## 2.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및 근로요건

□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는 점증구간과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을 가진 구조인 반면 영국과 뉴질랜드는 최소근로시간을 두어 이 시간을 초과하면 한도소득 이하 소득자에게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평탄, 점감 구간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구조의 특성상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는 점증, 평탄, 점감구간을 가지므로 최소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음

○ 반면, 평탄, 점감구간만을 가진 영국과 뉴질랜드는 최소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함

– 영국의 경우는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근로시간 요건이 필요하며 주당 30시간

- 이상 근로 시에 추가급여를 지급함
- 뉴질랜드는 한부모의 경우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요건이 필요하며, 부부의 경우는 주당 최소 30시간의 근로시간요건이 필요함
  - 조사대상국 모두 근로와 연계 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영국은 근로 없이도 유자녀의 경우 CTC를 지급하고 뉴질랜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표 IV-2〉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및 근로요건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급여체계	점중, 평탄, 점감	점중, 평탄, 점감	점중, 평탄, 점감	평탄, 점감	평탄, 점감
근로시간 요건	없음	없음	없음	- 최소 16시간 - 30시간(추가)	- 부부: 최소 30시간 - 한부모: 최소 20시간
근로연계 수급여부	○ - 근로 시 지급	○ - 근로 시 지급	○ - 근로 시 지급 (최저근로 소득요건 있음)	○ - 근로 시 지급 - 근로없이 유자녀인 경우 지급(CTC)	○ - 근로 시 지급 - 유자녀인 경우만 지급

### 3. 임금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조사대상국 모두 예외 없이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을 두지 않는 적용기준을 가지고 있음
- 주요하게 적용되는 요건은 가구(개인)의 소득요건에 근로시간과 자녀 양육 여부 및 자녀수에 따른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유인과 아동요건이 통합되어 지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미국·영국·뉴질랜드는 소득요건, 부양자녀요건, 자녀수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소득요건과 부양자녀요건은 가지고 있으나 자녀수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이와 같이 임금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과 기준소득의 범위를 각국별로 살펴보면, 신청자격은 자녀유무, 배우자유무 및 자녀수 등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었으며, 기준소득은 3~4가지의 유사한 구분을 두고 있음
  
- 미국의 EITC는 ① 임금소득자급여, ② 자영업자 순손익, ③ 법정임금소득자의 총소득으로 소득구성요소를 구분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기본적용요건, 자녀유무 요건 및 자녀수 요건의 3단계로 적용요건을 구분하고 있음
  - 최저소득한도는 없으며, 부부합산소득 기준으로 최고소득한도는 3자녀 이상 4만 9,078달러이고 자녀가 없을 때 1만 8,740달러임
  
- 캐나다의 WITB는 ① 고용소득, ② 과세대상 장학금, ③ 자영업자 소득, ④ 자원봉사대가 중 면세소득으로 소득산정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요건은 19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자녀요건과 배우자요건을 가지고 있음
  - 최저소득 기준 3천캐나다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WITB를 신청할 수 있음
  
- 영국의 WTC에 적용되는 소득범위는 ① 고용소득(임금소득자, 자영업자), ② 특정 혜택, ③ 기타 소득이며, 신청자격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6세 이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이상이 되어야 급여자격이 주어짐
  - 최저소득 기준은 6,420파운드로서 이 소득까지는 일정금액의 급여가 지원되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41%의 점감율로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게 됨
  
- 뉴질랜드의 IWTC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① 급여소득, ② 주주-직원 급여소득, ③ 사업소득이며, 신청자격요건은 18세 이하의 부양자녀를 둔 16세 이상의 부모 및 아동보호자에게 급여자격이 주어짐

〈표 IV-3〉 주요국의 임금소득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sup>1)</sup> 비교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개요	○ EITC - 근로소득, 자녀의 수, 납세자 구분에 따라 공제액 산출	○ WITB - 근로소득과 독신/가구당 급여 산출	○ WTC 및 CTC - WTC: 근로연계 - CTC: 아동연계	○ WfFTC - IWTC: 자녀, 소득연계 - FTC: 자녀를 가진 모든 가구 ○ IETC - 자녀관계 없이 저소득 가구 지원
신청 자격	○ 3단계 적용요건 검토 - 1단계: 모든 대상자 적용요건 ① 조정총소득, ② 부부합산 신고, ③ 국외소득의 소득세 감면 불허, ④ 투자소득금액 제한, ⑤ 근로소득, ⑥ 사회보장번호, ⑦ 거주자 - 2단계: 자녀 유무에 따른 요건 - 3단계: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 과세기간 동안 거주자 ○ 19세 이상,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께 거주, 자녀와 함께 거주 ○ 근로소득 3,000 CAD 이상	○ WTC 자격요건 - 자녀: ×(25세, 30시간) - 독신, 자녀: ○ (16세, 16시간) - 부부, 자녀: ○ (16세, 16시간-독신 24시간-부부합산)	○ WfFTC (IWTC와 동일) - 18세 이하의 부양자녀 - 아동보호자 및 부모에게 지급 - 부모나이 16세 이상 - 거주요건 충족 (임시비자, 불법체류는 불가)
소득 기준 금액	○ 최저소득기준은 없음 ○ 최고소득한도(부부합산) - 3자녀 이상: \$49,078 - 2자녀: \$46,044 - 1자녀: \$41,132 - 0자녀: \$18,740	○ 최저소득: 3,000 CAD ○ 최고소득: - 독신: 17,004 CAD - 가구: 26,218 CAD	○ 최저소득한도 - £6,420(점감율-41%) ○ CTC적용한도 - £15,860	○ IWTC 최저소득한도 - 세전 59,000 NZD ○ IETC 소득범위 - 세전 24,000~48,000 NZD
기준 소득 범위	○ 소득의 범위 ① 임금소득자 급여 ② 자영업자 순손익 ③ 법정임금소득자의 총소득	○ 소득의 범위 ① 고용소득 ② 과세대상 장학금 ③ 자영업자 소득 ④ 자원봉사 대가중 면세소득	○ 소득의 범위 ① 고용 소득 (급여, 자영업자) ② 특정 혜택 ③ 기타 소득 (£300 ↑ 이자, 연금, 재산소득)	○ 소득범위 ① 급여소득 ② 주주-직원 급여소득 ③ 사업소득

주: 1)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모두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적용 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 최저소득한도는 세전 연간 5만 9천뉴질랜드달러로서 이 소득까지 일정금액의 급여가 지원되다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게 됨
- 그 외 2009년에 가족지원제도의 혜택 및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연간소득 2만 4천~4만 8천뉴질랜드달러)에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IETC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

#### 4. 자영업자의 근로장려세제 적용 시 소득산정

-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및 소득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게 소득분류 및 공제가능 유무를 구분하고 있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는 나라가 존재함
- 미국의 자영업자 소득산정 방식은 총수입에서 제품의 원가 및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 사업에서 발생한 순손익을 기준으로 삼는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소득산정기준과 동일함
  - 자영업 근로소득은 농업 및 사업에서 발생한 순손익, 자원보전프로그램지급금, 교회종사자 소득으로 구분됨
- 캐나다의 자영업 소득은 사업소득, 전문직소득, 수수료, 농업 및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함
  - WITB 목적의 자영업자 소득산정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순손익은 사업소득 등에서 제조원가 및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차감하고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함
  - 자영업자의 순손익이 손실인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영국의 자영업자 소득산정 방식에서는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거래손실, 연금기여금, 기부금총액)을 제외하여 산출소득을 계산함
  - 세부적으로 이윤을 계산하기 어려운 특별한 직업을 가진 농민·예술가, 하숙인,

양육보호자 등에게는 단순하게 소득을 산정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자영업자 소득산정방식에서는 총소득에서 총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후 공적급여에 해당되는 노령, 출산 등 각종보험수당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비거주자 해외소득 및 자녀의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하여 최종소득을 계산함
  - 그 외 집에서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자영업 면허를 발급하고 비용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비용(또는 실제비용)을 공제해 주는 방식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주요국은 모두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동일한 소득세 과세체제로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기 위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즉, 기존의 과세체계 내에서 산정된 과세소득을 근로소득장려세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사용하되, 국가별로 공적급여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하는 세부내역의 차이는 존재함
  
- 구체적으로 주요국의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기준소득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임금소득자 항목에는 공통적으로 급여 성격의 소득과 파업수당이 포함되고 자영업자 항목은 사업 및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존재함
  - 미국의 경우, 군인의 위험특별수당에 대해 근로소득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국과 뉴질랜드는 임금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근로로 인한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기준소득에 포함하고 있음
  - 캐나다는 자영업 소득이 손실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서 자영업소득 외의 소득과 상계를 금지하고 있음

〈표 IV-4〉 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시 소득산정 방식 비교

구 분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자영업자 포함여부	○ 임금소득자·자영업자 구분 없음	○ 임금소득자·자영업자 구분 없음	○ 임금소득자·자영업자 구분 없음	○ 임금소득자·자영업자 구분 없음
신청자격	임금소득자와 동일기준	임금소득자와 동일기준	임금소득자와 동일기준	임금소득자와 동일기준
자영업자 소득산정 방식	○ 자영업 근로소득: 농업 및 사업에서 발생한 순손익, 자원보전 프로그램지급금, 교회 종사자 소득 - 사업에서 발생한 순손익 = 총 수입 - 환입 및 제품원가 + 기타소득 - 사업비용	○ 자영업 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소득, 수수료, 농업 및 어업소득 - 자영업 순소득 = 사업소득 등 - 제조원가 및 직접비용 - 간접비용 ± 조정항목	○ 소득산정방식 - 1단계: 이윤계산 (총소득 - 총비용) - 2단계: 공제항목 (거래손실, 연금기여금, 기부금총액) - 3단계: 최종 과세소득 ○ 농민, 예술가, 하숙인 등 예외규정	○ 소득산정방식 - 총소득(+): 자영업, 부동산·신탁, 임대, 해외소득 등 - 손실고려(-): 영업손실, 기타 적격손실 - 공적급여(+): 노령·군인연금,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및 기타 보험수당 등 - 기타소득(+): 비거주배우자해외소득, 자녀의 이자·배당·임대소득, 기타수령액
자영업 관련 특별규정	- 법정임금소득자 <sup>1)</sup> : 고용주가 임금소득자에게 발행하는 Form W-2의 과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함	- 자영업소득이 손실인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농민·예술가, 하숙인, 양육보호자에게 2년 평균소득 및 면제한도소득을 적용하는 규정 존재	- 집에서 보육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는 표준비용을 공제하는 예외규정 적용

주: 1) 법정임금소득자는 독립계약자 중 업무유형 및 업무내용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보험모집인 등이 이에 해당됨

〈표 IV-5〉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임금소득자·자영업자의 기준소득 범위

	임금소득자	자영업자
미국	① 과세소득인 임금, 급여 팁 등 ② 노동조합이 지급한 파업수당 ③ 최소퇴직연령 이전에 수취한 과세대상 장애 급여 <sup>1)</sup> ④ 전투지역 근무 중인 군인의 위험특별수당 <sup>2)</sup>	① 농업에서 발생한 순손익 ② 자원보전프로그램지급금 ③ 사업에서 발생한 순손익 - 법정임금소득자 <sup>3)</sup> : W-2에 기재된 과세소득
캐나다	① 고용소득: - 급여와 상여금, 휴가수당, 봉사료, 사례비, 이사급여, 경영자급여, 유산관리인급여 - 고용상태에서 수취한 수수료, 과세대상 보조금 등 - 실업급여프로그램에 의한 급여 - 근로자복지프로그램에 의한 급여 및 종업원 신탁 분배금 - 비상시 자원봉사자로서 수취한 대가 중 면세소득(1,000 CAD) 초과분 ② 임금노동자보호법에 의해 수취한 금액	① 사업·전문직·중개인·농업·어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sup>4)</sup> ② 자영업 소득이 손실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자영업 소득 외의 소득과 상계 불가)
영국	① 급여소득(급여, 팁, 상금, 상여금 포함) ② 조합에서 받은 파업수당 ③ 교도소 등에서 받은 급여	① 판매(매출)소득 ② 영업관련 이자, 장비판매, 임대소득 ③ 해외영업소득 ④ 농민·예술가·하숙인·양육보호자 특별규정 적용
	- 공통적용 소득 ① 기타소득 <sup>5)</sup> : 투자 <sup>6)</sup> ·저축·이자소득, 연금소득, 신탁소득(임대포함), 해외소득 ② 특정사회보장혜택	
뉴질랜드	① 급여소득 ② 주주·직원 급여 ③ 기타소득(사업, 임대, 해외 소득)	① 자영업소득 ② 부동산·신탁·임대소득 ③ 해외소득
	- 공통적용 소득 ① 공적급여: 노령·군인연금,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 및 기타 보험수당 등 ② 기타소득: 비거주배우자 해외소득, 자녀의 이자·배당·임대소득, 기타수령액	

주: 1) 최소퇴직연령 이후에 수취하는 장애급여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2) 근로소득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3) 독립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목적상 임금소득자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정임금소득자로 처리되는 경우 고용주가 Form W-2에 법정임금소득자임을 표시하여 발행함  
 4) WITB 제도 내에서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소득세제상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함  
 5) £300 미만은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된 소득만 합산됨  
 6) ISAs 등의 비과세투자소득은 제외됨

## V. 시사점 및 결론

### 1.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및 적용요건

- 국제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점증-평탄-점감 구간을 가진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뉴질랜드는 평탄-점감 구간만을 가진 형태로 보육지원과 연계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운영되고 있음
- 주요국 중 미국이 가장 오래 전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뉴질랜드, 캐나다는 근로유인제도의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음
  - 미국의 경우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왔으며, 영국의 경우도 1999년 근로유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육지원 연계 등의 형태로 제도가 변천해왔음
  - 이처럼 우리나라도 도입 시점에는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도입하였으나 제도가 정착해 가면서 근로소득자 외의 근로빈곤층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요건에 있어서 주요국은 근로소득 및 근로시간 요건과 부양자 요건을 두고 있었으며, 그 외 기타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 근로소득 요건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은 최소소득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는 최소소득기준이 있음
    - 영국과 뉴질랜드는 최소소득 이하 소득자에게는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최저근로소득 이하 소득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요건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최소시간요건이 없는 반면 영국, 뉴질랜드는 최저근로시간 요건을 가지고 있음
    - 이는 근로장려세제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영국과 뉴질랜드는 점증

구간 없이 평탄구간을 시작하므로 최소 근로시간 적용요건을 두고 있음

- 부양자 요건의 경우, 배우자 요건과 부양자녀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국, 캐나다, 영국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독신이어도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됨
  -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고 우리나라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어야만 적용대상에 포함됨
- 기타요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적용요건인 주택요건 및 재산가액요건 등임
-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특이점은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있어야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독신은 제외된다는 기타요건으로서 주택요건 및 재산가액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임
  - 이러한 적용요건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 및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주요국 중 영국과 뉴질랜드는 투자소득·금융재산·부동산 소득 및 비거주자소득과 수동적 소득까지도 산정소득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재산요건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영국과 뉴질랜드는 실질적인 가용소득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는 2011년 4월 일반적으로 비과세대상 소득인 비거주배우자의 소득과 자녀의 이자·배당·임대 소득 및 친인척에게 받은 기타수령액을 소득산정기준에 포함한 바 있음
- 이처럼 제도는 각 국가의 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환경에 기인되므로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범위를 확대·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2.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조사대상 국가 모두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음
  - 신청자격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에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소득 기준 금액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의 근로소득 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소득세의 과세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는 과세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경우 납세자 편의에 따라 다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목회자 급여의 일부로 제공되는 주택임대가치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로소득에는 포함되고, 교도시설 수감자의 소득은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만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
  - 미국의 전투지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특별수당은 비과세소득이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와 같이, 비과세소득인 목회자의 주택임대가치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거나 비과세소득인 위험특별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으로의 포함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 이외의 제도가 갖는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그로 인한 근로장려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의 편의에 맞게 운영되는 사례로 이해됨
    - 이는 단지 자영업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조세지원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가 상충되는 상황을 적절히 조화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히 업종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으나, 영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세소득 산정이 어려운 일부 직업군에 특별규정을 적용하기도 하고 뉴질랜드의 경우는 표준비용을 적용하기도 함

- 영국의 일부 직업군인 하숙인의 경우는 특정한도 이하의 소득까지 감면이 허용되며, 농민과 예술가의 경우는 연간소득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소득을 2년 평균하여 산정하고, 양육보호자의 경우 특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뉴질랜드의 경우는 집에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표준비용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산정의 간편화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간편한 규정을 두는 것은 연간소득의 편차를 조정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용 산정이 어려울 때 감면·조정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급여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있음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경우 사업소득자이지만 총수입금액을 총소득으로 하고 있고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제외한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총소득으로 하고 있음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경우 사업소득자이긴 하지만 특정 기업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임금소득자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총수입금액 역시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실질적인 필요경비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다른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필요할 것임
    - 미국은 특정 유형에 해당하고 요건을 만족하는 독립계약자의 경우 세금 목적상 '법정임금소득자(statutory employee)'로 정의하고 일반적인 사업소득자와는 달리 처리함
- 우리나라는 현재 근로소득자와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의 범위에 포함할 예정임
- 실제로 근로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 다만 그동안은 소득과약의 미비로 시행하지 못하였음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를 근로장려세제에 포함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이 낮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참고문헌

- 김재진,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 조세제도-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5. 6.
- \_\_\_\_\_, 「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 조세제도-영국사례(Working Tax Credit 및 Child Tax Credit제도)」,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 \_\_\_\_\_, 「미국 EITC의 태동과 시대상황」,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 김재진·박능후,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05. 7.
- 박능후,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2005. 3.
- 송헌재·전영준,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11. 12.
- 이준규·박성욱, 『세법개론』, 영화조세통람, 2012.
- 유혜경, 「공공부조법상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임완섭, 「영국의 복지개혁: 일하는 복지(welfare that works)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1. 3.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전병목,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2006. 7.
- 조영훈, 『캐나다 복지국가 연구』, 집문당,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미국』, 2012.
- \_\_\_\_\_,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2012.
- \_\_\_\_\_,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한국』, 2012.
- Annual Reports, 2009-10 for FaHCSIA, DEEWR and DVA

- Canada Revenue Agency, *Business and Professional Income*, 2011.
- Canada Revenue Agency,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2011.
- CCH, US Master Tax Guide, 2012.
- CCH, Canadian Master Tax Guide, 2012.
- CCH, New Zealand Master Tax Guide, 2012.
- HM Revenue & Customs, 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Statistics, 2012.
- Hots, V. Joseph and John Karl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2002. 8.
- Inland Revenue,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2013\_ir271, 2013.
- Inland Revenue,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Guide, 2012.
- IRS, *Earned Income Credit (EIC)*, Publication 596, 2012. 1. 12.
- IRS, *Tax Guide 2011*, publication 17, 2011. 12. 21.
- RPRC, An Evaluation of 'In Work Benefits' in New Zealand: Use of the In Work Tax Credit to Encourage Labour Supply: Implications for an Ageing Population, 2008.

<http://www.direct.gov.uk/>

<http://www.litr.gov.uk/>

<http://www.revenuebenefits.org.uk/>

<http://www.hmrc.gov.uk/>

<http://www.irs.gov/>

<http://www.cra-arc.gc.ca/menu-eng.html>

<http://www.taxtips.ca/filing/witb.htm>

<http://www.ird.govt.nz/>

## 〈부록 1〉 미국의 EITC 신청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checklist

<b>Interest and Dividends</b>	
1. Enter any amount from Form 1040, line 8a. . . . .	1. <u>200</u>
2. Enter any amount from Form 1040, line 8b, plus any amount on Form 8814, line 1b. . . . .	2. _____
3. Enter any amount from Form 1040, line 9a. . . . .	3. _____
4. Enter the amount from Form 1040, line 21, that is from Form 8814 if you are filing that form to report your child's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on your return. (If your child received an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use Worksheet 2, in this chapter, to figure the amount to enter on this line.) . . . . .	4. _____
<b>Capital Gain Net Income</b>	
5. Enter the amount from Form 1040, line 13. If the amount on that line is a loss, enter -0-. . . . .	5. <u>4,000</u>
6. Enter any gain from Form 4797, Sales of Business Property, line 7. If the amount on that line is a loss, enter -0-. (But, if you completed lines 8 and 9 of Form 4797, enter the amount from line 9 instead.) . . . . .	6. <u>3,000</u>
7. Subtract line 6 of this worksheet from line 5 of this worksheet. (If the result is less than zero, enter -0-.) . . . . .	7. <u>1,000</u>
<b>Royalties and Rental Income from Personal Property</b>	
8. Enter any royalty income from Schedule E, line 23d, plus any income from the rental of personal property shown on Form 1040, line 21. . . . .	8. _____
9. Enter any expenses from Schedule E, line 20, related to royalty income, plus any expenses from the rental of personal property deducted on Form 1040, line 36. . . . .	9. _____
10. Subtract the amount on line 9 of this worksheet from the amount on line 8. (If the result is less than zero, enter -0-.) . . . . .	10. _____
<b>Passive Activities</b>	
11. Enter the total of any net income from passive activities (such as income included on Schedule E, line 26, 29a (col. (g)), 34a (col. (d)), or 40). (See instructions below for lines 11 and 12.) . . . . .	11. _____
12. Enter the total of any losses from passive activities (such as losses included on Schedule E, line 26, 29b (col. (f)), 34b (col. (c)), or 40). (See instructions below for lines 11 and 12.) . . . . .	12. _____
13. Combine the amounts on lines 11 and 12 of this worksheet. (If the result is less than zero, enter -0-.) . . . . .	13. _____
14. Add the amounts on lines 1, 2, 3, 4, 7, 10, and 13. Enter the total. <b>This is your Investment Income.</b> . . . . .	14. <u>1,200</u>
15. Is the amount on line 14 more than \$3,150? <input type="checkbox"/> Yes. You cannot take the credit.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Go to <i>Step 3</i> of the Form 1040 instructions for lines 64a and 64b to find out if you can take the credit (unless you are using this publication to find out if you can take the credit; in that case, go to <i>Rule 7</i> , next).	
<p><b>Instructions for lines 11 and 12.</b> In figuring the amount to enter on lines 11 and 12, do not take into account any royalty income (or loss) included on line 26 of Schedule E or any amount included in your earned income. To find out if the income on line 26 or line 40 of Schedule E is from a passive activity, see the Schedule E instructions. If any of the rental real estate income (or loss) included on Schedule E, line 26, is not from a passive activity, print "NPA" and the amount of that income (or loss) on the dotted line next to line 2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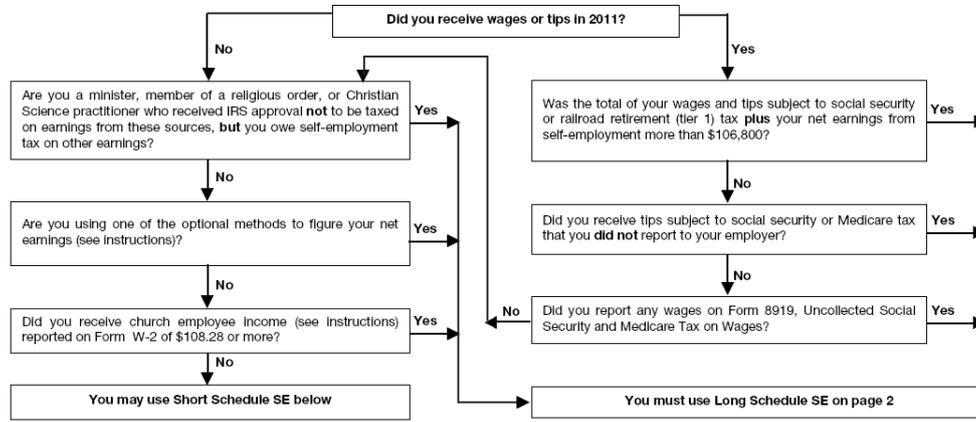
## 〈부록 2〉 SE tax 부과를 위한 자영업자 소득산정 스케줄

<b>SCHEDULE SE</b> <b>(Form 1040)</b>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99)	<b>Self-Employment Tax</b>  ▶ Attach to Form 1040 or Form 1040NR. ▶ See separate instructions.	OMB No. 1545-0074  <b>2011</b> Attachment Sequence No. <b>17</b>
Name of person with self-employment income (as shown on Form 1040)		Social security number of person with self-employment income ▶

**Before you begin:** To determine if you must file Schedule SE, see the instructions.

### May I Use Short Schedule SE or Must I Use Long Schedule SE?

**Note.** Use this flowchart **only** if you must file Schedule SE. If unsure, see *Who Must File Schedule SE* in the instructions.



#### Section A—Short Schedule SE. Caution. Read above to see if you can use Short Schedule SE.

<b>1a</b> Net farm profit or (loss) from Schedule F, line 34, and farm partnerships, Schedule K-1 (Form 1065), box 14, code A . . . . .	<b>1a</b>		
<b>b</b> If you received social security retirement or disability benefits, enter the amount of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payments included on Schedule F, line 4b, or listed on Schedule K-1 (Form 1065), box 20, code Y . . . . .	<b>1b</b>	(	)
<b>2</b> Net profit or (loss) from Schedule C, line 31; Schedule C-EZ, line 3; Schedule K-1 (Form 1065), box 14, code A (other than farming); and Schedule K-1 (Form 1065-B), box 9, code J1. Ministers and members of religious orders, see instructions for types of income to report on this line. See instructions for other income to report . . . . .	<b>2</b>		
<b>3</b> Combine lines 1a, 1b, and 2 . . . . .	<b>3</b>		
<b>4</b> Multiply line 3 by 92.35% (.9235). If less than \$400, you do not owe self-employment tax; <b>do not</b> file this schedule unless you have an amount on line 1b . . . . . ▶	<b>4</b>		
<b>Note.</b> If line 4 is less than \$400 due to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payments on line 1b, see instructions. <b>5 Self-employment tax.</b> If the amount on line 4 is: • \$106,800 or less, multiply line 4 by 13.3% (.133). Enter the result here and on <b>Form 1040, line 56, or Form 1040NR, line 54</b> • More than \$106,800, multiply line 4 by 2.9% (.029). Then, add \$11,107.20 to the result. Enter the total here and on <b>Form 1040, line 56, or Form 1040NR, line 54</b> . . . . .	<b>5</b>		
<b>6 Deduction for employer-equivalent portion of self-employment tax.</b> If the amount on line 5 is: • \$14,204.40 or less, multiply line 5 by 57.51% (.5751) • More than \$14,204.40, multiply line 5 by 50% (.50) and add \$1,067 to the result. Enter the result here and on <b>Form 1040, line 27, or Form 1040NR, line 27</b> . . . . .	<b>6</b>		

**Section B—Long Schedule SE**

**Part I Self-Employment Tax**

**Note.** If your only income subject to self-employment tax is church employee income, see instructions. Also see instructions for the definition of church employee income.

**A** If you are a minister, member of a religious order, or Christian Science practitioner and you filed Form 4361, but you had \$400 or more of other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check here and continue with Part I . . . . .

**1a** Net farm profit or (loss) from Schedule F, line 34, and farm partnerships, Schedule K-1 (Form 1065), box 14, code A. **Note.** Skip lines 1a and 1b if you use the farm optional method (see instructions) . . . . . **1a**

**b** If you received social security retirement or disability benefits, enter the amount of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payments included on Schedule F, line 4b, or listed on Schedule K-1 (Form 1065), box 20, code Y . . . . . **1b** ( )

**2** Net profit or (loss) from Schedule C, line 31; Schedule C-EZ, line 3; Schedule K-1 (Form 1065), box 14, code A (other than farming); and Schedule K-1 (Form 1065-B), box 9, code J1. Ministers and members of religious orders, see instructions for types of income to report on this line. See instructions for other income to report. **Note.** Skip this line if you use the nonfarm optional method (see instructions) . . . . . **2**

**3** Combine lines 1a, 1b, and 2 . . . . . **3**

**4a** If line 3 is more than zero, multiply line 3 by 92.35% (.9235). Otherwise, enter amount from line 3 **Note.** If line 4a is less than \$400 due to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payments on line 1b, see instructions. . . . . **4a**

**b** If you elect one or both of the optional methods, enter the total of lines 15 and 17 here . . . . . **4b**

**c** Combine lines 4a and 4b. If less than \$400, stop; you do not owe self-employment tax. **Exception.** If less than \$400 and you had church employee income, enter -0- and continue ▶ **4c**

**5a** Enter your church employee income from Form W-2. See instructions for definition of church employee income . . . . . **5a**

**b** Multiply line 5a by 92.35% (.9235). If less than \$100, enter -0- . . . . . **5b**

**6** Add lines 4c and 5b . . . . . **6**

**7** Maximum amount of combined wages and self-employment earnings subject to social security tax or the 4.2% portion of the 5.65% railroad retirement (tier 1) tax for 2011 . . . . . **7** 106,800 00

**8a** Total social security wages and tips (total of boxes 3 and 7 on Form(s) W-2) and railroad retirement (tier 1) compensation. If \$106,800 or more, skip lines 8b through 10, and go to line 11 . . . . . **8a**

**b** Unreported tips subject to social security tax (from Form 4137, line 10) . . . . . **8b**

**c** Wages subject to social security tax (from Form 8919, line 10) . . . . . **8c**

**d** Add lines 8a, 8b, and 8c . . . . . **8d**

**9** Subtract line 8d from line 7. If zero or less, enter -0- here and on line 10 and go to line 11 . . . . . **9**

**10** Multiply the smaller of line 6 or line 9 by 10.4% (.104) . . . . . **10**

**11** Multiply line 6 by 2.9% (.029) . . . . . **11**

**12** Self-employment tax. Add lines 10 and 11. Enter here and on Form 1040, line 56, or Form 1040NR, line 54 . . . . . **12**

**13** Deduction for employer-equivalent portion of self-employment tax. Add the two following amounts.  
 • 59.6% (.596) of line 10.  
 • One-half of line 11.  
 Enter the result here and on Form 1040, line 27, or Form 1040NR, line 27 . . . . . **13**

**Part II Optional Methods To Figure Net Earnings** (see instructions)

**Farm Optional Method.** You may use this method only if (a) your gross farm income<sup>1</sup> was not more than \$6,720, or (b) your net farm profits<sup>2</sup> were less than \$4,851.

**14** Maximum income for optional methods . . . . . **14** 4,480 00

**15** Enter the smaller of: two-thirds (2/3) of gross farm income<sup>1</sup> (not less than zero) or \$4,480. Also include this amount on line 4b above . . . . . **15**

**Nonfarm Optional Method.** You may use this method only if (a) your net nonfarm profits<sup>3</sup> were less than \$4,851 and also less than 72.189% of your gross nonfarm income,<sup>4</sup> and (b) you had net earnings from self-employment of at least \$400 in 2 of the prior 3 years. **Caution.** You may use this method no more than five times.

**16** Subtract line 15 from line 14 . . . . . **16**

**17** Enter the smaller of: two-thirds (2/3) of gross nonfarm income<sup>4</sup> (not less than zero) or the amount on line 16. Also include this amount on line 4b above . . . . . **17**

<sup>1</sup> From Sch. F, line 9, and Sch. K-1 (Form 1065), box 14, code B.  
<sup>2</sup> From Sch. F, line 34, and Sch. K-1 (Form 1065), box 14, code A—minus the amount you would have entered on line 1b had you not used the optional method.  
<sup>3</sup> From Sch. C, line 31; Sch. C-EZ, line 3; Sch. K-1 (Form 1065), box 14, code A; and Sch. K-1 (Form 1065-B), box 9, code J1.  
<sup>4</sup> From Sch. C, line 7; Sch. C-EZ, line 1d; Sch. K-1 (Form 1065), box 14, code C; and Sch. K-1 (Form 1065-B), box 9, code J2.

### 〈부록 3〉 미국의 자영업자 사업소득 보고를 위한 스케줄

<b>SCHEDULE C</b> <b>(Form 1040)</b>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99)	<b>Profit or Loss From Business</b> (Sole Proprietorship)  <b>► For information on Schedule C and its instructions, go to <a href="http://www.irs.gov/schedulec">www.irs.gov/schedulec</a></b> <b>► Attach to Form 1040, 1040NR, or 1041; partnerships generally must file Form 1065.</b>	OMB No. 1545-0074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2011</div> Attachment Sequence No. <b>09</b>
Name of proprietor		Social security number (SSN)
<b>A</b> Principal business or profession, including product or service (see instructions)	<b>B</b> Enter code from instructions	
<b>C</b> Business name. If no separate business name, leave blank.	<b>D</b> Employer ID number (EIN), (see instr.)	
<b>E</b> Business address (including suite or room no.) City, town or post office, state, and ZIP code		
<b>F</b> Accounting method: (1) <input type="checkbox"/> Cash (2) <input type="checkbox"/> Accrual (3) <input type="checkbox"/> Other (specify) ►		
<b>G</b> Did you "materially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is business during 2011? If "No," see instructions for limit on losses . .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H</b> If you started or acquired this business during 2011, check here . .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I</b> Did you make any payments in 2011 that would require you to file Form(s) 1099? (see instructions) . .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J</b> If "Yes," did you or will you file all required Forms 1099? . .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Part I Income</b>		
<b>1a</b> Merchant card and third party payments. For 2011, enter -0-	<b>1a</b>	
<b>b</b> Gross receipts or sales not entered on line 1a (see instructions)	<b>1b</b>	
<b>c</b> Income reported to you on Form W-2 if the "Statutory Employee" box on that form was checked. <b>Caution.</b> See instr. before completing this line	<b>1c</b>	
<b>d</b> <b>Total gross receipts.</b> Add lines 1a through 1c	<b>1d</b>	
<b>2</b> Returns and allowances plus any other adjustments (see instructions)	<b>2</b>	
<b>3</b> Subtract line 2 from line 1d	<b>3</b>	
<b>4</b> Cost of goods sold (from line 42)	<b>4</b>	
<b>5</b> <b>Gross profit.</b> Subtract line 4 from line 3	<b>5</b>	
<b>6</b> Other income, including federal and state gasoline or fuel tax credit or refund (see instructions)	<b>6</b>	
<b>7</b> <b>Gross income.</b> Add lines 5 and 6	<b>7</b>	
<b>Part II Expenses</b> <span style="float: right;">Enter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 only on line 30.</span>		
<b>8</b> Advertising	<b>8</b>	<b>18</b> Office expense (see instructions)
<b>9</b> Car and truck expenses (see instructions)	<b>9</b>	<b>19</b> Pension and profit-sharing plans
<b>10</b> Commissions and fees	<b>10</b>	<b>20</b> Rent or lease (see instructions):
<b>11</b> Contract labor (see instructions)	<b>11</b>	<b>a</b> Vehicles, machinery, and equipment
<b>12</b> Depletion	<b>12</b>	<b>b</b> Other business property
<b>13</b> Depreciation and section 179 expense deduction (not included in Part III) (see instructions)	<b>13</b>	<b>21</b> Repairs and maintenance
<b>14</b> Employee benefit programs (other than on line 19)	<b>14</b>	<b>22</b> Supplies (not included in Part III)
<b>15</b> Insurance (other than health)	<b>15</b>	<b>23</b> Taxes and licenses
<b>16</b> Interest:		<b>24</b> Travel, meals, and entertainment:
<b>a</b> Mortgage (paid to banks, etc.)	<b>16a</b>	<b>a</b> Travel
<b>b</b> Other	<b>16b</b>	<b>b</b> Deductible meals and entertainment (see instructions)
<b>17</b> Legal and professional services	<b>17</b>	<b>25</b> Utilities
		<b>26</b> Wages (less employment credits)
		<b>27a</b> Other expenses (from line 48)
		<b>b</b> Reserved for future use
<b>28</b> <b>Total expenses</b> before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home. Add lines 8 through 27a	<b>28</b>	
<b>29</b> Tentative profit or (loss). Subtract line 28 from line 7	<b>29</b>	
<b>30</b>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 Attach <b>Form 8829</b> . Do not report such expenses elsewhere	<b>30</b>	
<b>31</b> <b>Net profit or (loss).</b> Subtract line 30 from line 29.	<b>31</b>	
• If a profit, enter on both <b>Form 1040, line 12</b> (or <b>Form 1040NR, line 13</b> ) and on <b>Schedule SE, line 2</b> . If you entered an amount on line 1c, see instr. Estates and trusts, enter on <b>Form 1041, line 3</b> . • If a loss, you <b>must</b> go to line 32.		
<b>32</b> If you have a loss, check the box that describes your investment in this activity (see instructions). • If you checked 32a, enter the loss on both <b>Form 1040, line 12</b> , (or <b>Form 1040NR, line 13</b> ) and on <b>Schedule SE, line 2</b> . If you entered an amount on line 1c, see the instructions for line 31. Estates and trusts, enter on <b>Form 1041, line 3</b> . • If you checked 32b, you <b>must</b> attach <b>Form 6198</b> . Your loss may be limited.		<b>32a</b> <input type="checkbox"/> All investment is at risk. <b>32b</b> <input type="checkbox"/> Some investment is not at risk.
For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see your tax return instructions. <span style="float: right;">Cat. No. 11334P <b>Schedule C (Form 1040) 2011</b></span>		



## 〈부록 4〉 영국의 자영업자 소득산정 방식(예시)

### 1단계

#### 1. 각종혜택

- 현금으로 판매한 자산이나 재화
- 고용주가 지불한 개인적 비용(예-가스나 전기요금)
- 보육비용을 제외한 바우처와 토큰
- 자동차 운영비용에 대한 자동차 마일리지 수당
- 회사차량 및 차량 연료 보조
- 비용공제액

#### 2. 기타 소득

- 저축 및 투자 소득
- 주정부 연금과 연방 연금
- 재산 소득
- 신탁소득
- 해외소득
- 개념적 소득(notional income)

#### 3. 자산 소득

- 임대자산은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됨
- 임대 자산
  - 자영업 소득 이외에 임대자산에서 발생한 손실도 일반적인 소득세 산출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 가능하며, 임대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기타소득 란에 '0'을 기입함

○ 자산 소득에 대한 손실

- 일반적으로 손실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후연도로 이월됨. 2011년 4월 6일 부터 동일한 규칙이 가구 비치된 휴일임대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2011년 4월 5 일에 해소되지 않은 손실도 포함됨.
- 그러나 손실의 일부가 자본공제나 농지에서 발생한 경우는 손실의 일부만이 기타소득에서 공제되며, 나머지 손실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공제할 수 있음

예시)

James와 Sarah는 부부이고 Sarah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James는 자영업자이고 2011-2012년에 £25,000의 소득을 가짐. 그 외 몇 개의 임대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하나의 임대 사업에 포함됨.

2011-2012년에 James는 임대사업에서 허용가능 지출로 인해 £15,000의 손실이 발생함.

이러한 손실은 보통 이월되어 다음연도 임대사업 소득에서 공제됨.

그러나 James는 그의 임대 사업에 의한 일부의 순자본공제가 있으므로 손실의 일부분만 이 일반적인 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됨

- 자본공제 £10,000
- balancing charge 조정 £8,000
- 순자본공제 £2,000

결과적으로 James는 과세목적상 2011-2012년에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2,000의 공제만이 허용되어, 자영업 소득 £25,000에서 £2,000만 공제가 허용되고, 나머지 £13,000은 이후 연도로 이월되어 임대사업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일반소득에서는 공제되지 못함

## 2단계

- 적격한 Gift Aid의 기부금과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기여금은 전액 공제됨

예) 2011-2012년 Gift Aid로 £100를 기부했다면 총기부액은 £125임  
( $125=100*(100/80)$ )

### 3단계

- 총소득에서 거래를 통해 발생한 거래손실은 공제됨
- 거래손실은 다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합산 소득신고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함

구분	금액	기호
Gift Aid에 기부한 총액	£125	A
개인 연금이나 퇴직 연금 기여금 총액	+£100	B
거래손실	+£2,000	C
총 손실과 면제액	= £2,225	D

- 총손실과 면제액인 D가 총소득보다 작은 경우에는 총액 D가 모두 공제되며 D가 총소득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서 양식<sup>77)</sup>의 소득란에 '0'를 기입하면 됨
- 또한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손실은 전액 공제되고, 모두 공제되지 못했다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공제가 가능함

예시)

Helen은 ABC 회사에서 일함. 그녀는 2011~2012에 £18,870의 소득을 기록함. tax credits claim form에 자신을 'You' 자신의 남편 Derek을 'Your Partner'로 기록함. Derek은 자영업자로서 2011~2012년에 £10,500의 손실이 발생함. 이들에게 그 외 공제항목은 없음

근로소득자 Helen의 소득은 손실 공제 후

$$£18,870 - £10,500 = £8,370$$

77) tax credits claim form, TC603D Annual Declaration, 또는 TC603D2 Tax Credits Declaration 등이 있으며 이러한 양식의 총 소득란에 '0'을 기입

자영업자 Derek의 소득은 0 이 됨

**PART 2 INCOME DETAILS**  
Round down to the nearest pound.

**2.2 Earnings as an employee from all jobs**  
Enter your total earnings for the year, before tax and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and other deductions are taken off. See the Notes

£ 0 3 7 0 . 0 0 Estimate

**2.3 Company car and fuel, taxable vouchers, and payments in kind from all jobs**  
If you received any of these from your employer we need to know their total 'cash equivalent'. Enter the figures from form P11D or form P9D, given to you by your employer. See the Notes

£ . . . . . 0 0 Estimate

**2.4 Income from self-employment**  
If you made a loss, enter '0.00'. See the Notes

£ . . . . . 0 . 0 0 Estimate

£ 0	A
£ 0	B
£ 10500	C
£ 10500	D

### Working sheet to calculate relief and losses

Your income for the tax year  to

**Your details** (see 'Who should fill this in?' on page 1)

Name  National Insurance number

**Your partner's details** (for joint claims only)

Name  National Insurance number

#### Gift Aid, personal pension or retirement annuity contributions and trading losses

Step 1 - total your income	You	Your partner	Total
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Earnings as an employee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Benefits from your employer (see Note 1 on page 1)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come from self-employment <i>where there is a loss for that person, enter '0' in their box</i>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Total other income combined (see Notes 2 and 3 on page 2)			£ <input type="text"/>
Total income			£ <input type="text"/>
<b>Step 2 - deduct the following</b>			
Gross Gift Aid donations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A
Gross personal pension or retirement annuity contributions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B
Balance of income			£ <input type="text"/>
<b>Step 3</b>			
Deduct your trading loss <i>this is the loss that arose in the year forming the basis of your tax credits claim</i>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C
Balance of income <i>if minus, balance of trading loss to be carried forward against future profits of the same trade</i>			£ <input type="text"/>







### Calculating your taxable profit or loss (continued)

If you start or finish self-employment and your accounting period is not the same as your basis period (or there are overlaps or gaps in your basis periods), or in certain situations or trades or professions, you may need to make further tax adjustments - read pages SEFN 16 to SEFN 19 of the notes. In all cases, please complete boxes 72 and 75, or box 76, as applicable.

<p>65 Date your basis period began DD MM YYYY</p> <p>□□ □□ □□ □□</p>	<p>71 Averaging adjustment (only for farmers, market gardeners and creators of literary or artistic works) - if the adjustment needs to be taken off the profit figure, put a minus sign (-) in the box</p> <p>£ □□□□□□□□□□ • 00</p>
<p>66 Date your basis period ended</p> <p>□□ □□ □□ □□</p>	<p>72 Adjusted profit for 2011-12 (see Working Sheet on page SEFN 18) - if a loss, enter it in box 76</p> <p>£ □□□□□□□□□□ • 00</p>
<p>67 If your basis period is not the same as your accounting period, enter the adjustment needed to arrive at the profit or loss for the basis period - if the adjustment needs to be taken off the profit figure, put a minus sign (-) in the box</p> <p>£ □□□□□□□□□□ • 00</p>	<p>73 Loss brought forward from earlier years set off against this year's profits - up to the amount in box 63 or box 72, whichever is greater</p> <p>£ □□□□□□□□□□ • 00</p>
<p>68 Overlap relief used this year - read page SEFN 17 of the notes</p> <p>£ □□□□□□□□□□ • 00</p>	<p>74 Any other business income not included in boxes 14, 15 or 59 - for example, Business Start-up Allowance</p> <p>£ □□□□□□□□□□ • 00</p>
<p>69 Overlap profit carried forward</p> <p>£ □□□□□□□□□□ • 00</p>	<p>75 Total taxable profits from this business (box 72 minus box 73 + box 74 - or use the Working Sheet on page SEFN 18)</p> <p>£ □□□□□□□□□□ • 00</p>
<p>70 Adjustment for change of accounting practice - read page SEFN 17 of the notes</p> <p>£ □□□□□□□□□□ • 00</p>	

### Losses

If you have made a net loss for tax purposes (in box 64), or if you have losses from previous years, read page SEFN 19 of the notes and fill in boxes 76 to 79, as appropriate.

<p>76 Adjusted loss for 2011-12 (see Working Sheet on page SEFN 18)</p> <p>£ □□□□□□□□□□ • 00</p>	<p>78 Loss to be carried back to previous year(s) and set off against income (or capital gains)</p> <p>£ □□□□□□□□□□ • 00</p>
<p>77 Loss from this tax year set off against other income for 2011-12</p> <p>£ □□□□□□□□□□ • 00</p>	<p>79 Total loss to carry forward after all other set-offs - including unused losses brought forward</p> <p>£ □□□□□□□□□□ • 00</p>

### CIS deductions and tax taken off

<p>80 Deductions on payment and deduction statements from contractors - construction industry subcontractors only</p> <p>£ □□□□□□□□□□ • 00</p>	<p>81 Other tax taken off trading income</p> <p>£ □□□□□□□□□□ • 00</p>
--	---



<b>T1-2011</b>	<b>Working Income Tax Benefit</b>	<b>Schedule 6</b>
----------------	-----------------------------------	-------------------

For more information, see Line 453 in the guide. Complete this schedule, and **attach** a copy to your return to claim the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if you mee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n 2011:

- you were a resident of Canada throughout the year;
- you earned income from employment or business; and
- at the end of the year, you were 19 years of age or older, or you resided with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r your child.

The WITB is calculated based on the working income (calculated in Part A below) and your adjusted family net income (calculated in Part B below). You can claim the **basic** WITB (Step 2) if the working income (amount on line 8 below) is more than \$3,000. If you are eligible for the WITB **disability supplement** (Step 3), your working income (amount on line 7 below) must be more than \$1,150. **Also**, depending on your situation, your adjusted family net income must be less than a certain amount to entitle you to the WITB. Refer to the chart at the bottom of the next page to find these amounts.

**You cannot claim the WITB if in 2011:**

- you were enrolled as a full-time student at a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for more than 13 weeks in the year, unless you had an eligible dependant at the end of the year; or
- you were confined to a prison or similar institution for a period of at least 90 days during the year.

**Notes:** If you were married or living in a common-law relationship but did not have an eligible spouse or an eligible dependant, complete this schedule using the instructions as if you had neither an eligible spouse nor an eligible dependant.

If you are completing a final return for a deceased person who met the above conditions, you can claim the WITB for that person if the date of death was after June 30, 2011.

**Step 1 – Calculating your working income and adjusted family net income**

Do you have an eligible dependant? **381** Yes  1 No  2

Do you have an eligible spouse? **382** Yes  1 No  2

**Part A – Working income**

Complete columns 1 and 2 if you had an eligible spouse on December 31, 2011. Otherwise, complete column 1 only.

	Column 1 You	Column 2 Your eligible spouse
Employment income and other employment income reported on line 101 and line 104 of the return	3	3
Taxable part of scholarship income reported on line 130 <b>383+</b>	4	<b>384+</b>
Total self-employment income reported on lines 135, 137, 139, 141, and 143 of the return (excluding losses)	5	5
Tax-exempt part of working income earned on a reserve or an allowance received as an emergency volunteer <b>385+</b>	6	<b>386+</b>
Add lines 3 to 6. Enter the amount even if the result is "0".	7	<b>387=</b>
Add the amounts from line 7 in columns 1 and 2.	<b>Working income</b>	<b>8</b>

**Part B – Adjusted family net income**

Net income amount from line 236 of the return	9	9
Tax-exempt part of all income earned/received on a reserve or an allowance received as an emergency volunteer <b>388+</b>	10	<b>389+</b>
Total of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 repayment (line 213 of the return) and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 income repayment (included in line 232 of the return)	11	11
Add lines 9, 10, and 11.	12	12
Total of UCCB (line 117 of the return) and RDSP income (line 125 of the return)	13	13
Line 12 minus line 13 (if negative, enter "0")	14	<b>390=</b>
Add the amounts from line 14 in columns 1 and 2.	<b>Adjusted family net income</b>	<b>15</b>

Are you claiming the basic WITB? **391** Yes  1 No  2 If yes, complete Step 2 on the next page.

Are you claiming the WITB disability supplement for yourself? **392** Yes  1 No  2 If yes, complete Step 3 on the next page.

Does your eligible spouse qualify for the disability amount for himself or herself? **394** Yes  1 No  2 If yes, he or she must complete steps 1 and 3 on a separate Schedule 6.

**Go to Step 2 on the next page. ➔**

5000-S6

### Step 2 – Calculating your basic WITB

If you had an eligible spouse, only one of you can claim the basic WITB. However, the individual who received the WITB advance payment for 2011 is the individual who must claim the basic WITB for the year. If you had an eligible dependant, only one individual can claim the basic WITB for that same eligible dependant.

Amount from line 8 in Step 1			16
Base amount	=	3,000 00	17
Line 16 minus line 17 (if negative, enter "0")	=		18
Rate	×	25%	19
Multiply line 18 by line 19.	=		20
If you had neither an eligible spouse nor an eligible dependant, enter \$944. If you had an eligible spouse or an eligible dependant, enter \$1,714.			21
Amount from line 20 or line 21, whichever is less	▶		22
Amount from line 15 in Step 1			23
Base amount:			
If you had neither an eligible spouse nor an eligible dependant, enter \$10,711. If you had an eligible spouse or an eligible dependant, enter \$14,791.	=		24
Line 23 minus line 24 (if negative, enter "0")	=		25
Rate	×	15%	26
Multiply line 25 by line 26.	=		27
Line 22 minus line 27 (if negative, enter "0")	▶		28
Enter the amount from line 28 on line 453 of your return unless you complete Step 3.	=		28

### Step 3 – Calculating your WITB disability supplement

If you qualify for the disability amount for yourself, complete Step 3 to calculate your supplement. However, if you had an eligible spouse and both of you qualify for the disability amount, your spouse must complete steps 1 and 3 on a separate Schedule 6 to calculate his or her supplement and enter the amount on line 453 of his or her return.

Enter the amount from line 7 in column 1 of Step 1.			29
Base amount	=	1,150 00	30
Line 29 minus line 30 (if negative, enter "0")	=		31
Rate	×	25%	32
Multiply line 31 by line 32.	=		33
Amount from line 33 or \$472, whichever is less	▶		34
Amount from line 15 in Step 1			35
Base amount:			
If you had neither an eligible spouse nor an eligible dependant, enter \$17,002. If you had an eligible spouse or an eligible dependant, enter \$26,216.	=		36
Line 35 minus line 36 (if negative, enter "0")	=		37
Rate: If you had an eligible spouse and he or she also qualifies for the disability amount, enter 7.5%. Otherwise, enter 15%.	×		38
Multiply line 37 by line 38.	=		39
Line 34 minus line 39 (if negative, enter "0")	▶		40
If you completed Step 2, enter the amount from line 28. Otherwise, enter "0".	+		41
Add lines 40 and 41.	=		42
Enter this amount on line 453 of your return.	=		42

Adjusted family net income levels	You had neither an eligible spouse nor an eligible dependant	You had an eligible spouse or an eligible dependant
<b>Basic WITB</b> Adjusted family net income (line 15 in Step 1)	less than \$17,005	less than \$26,218
<b>WITB disability supplement</b> (you qualify for the disability amount) Adjusted family net income (line 15 in Step 1)	less than \$20,149	less than \$29,363
<b>WITB disability supplement</b> (you had an eligible spouse and both of you qualify for the disability amount) Adjusted family net income (line 15 in Step 1)	→	less than \$32,510



세법연구 12-07  
**주요국의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기준 연구**

---

2012년 8월 23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김재진 · 송은주 · 이정미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598-8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